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구금시설 연구모임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머리말 2

구금시설 현황 보고서 3

- 징벌집행
- 의료
- 권리구제수단
- 서신 및 집필권
- 계구사용

구금시설 실태조사 58

- 서울지방교정청(13개소)
- 대전지방교정청(8개소)
- 대구지방교정청(14개소)
- 광주지방교정청(7개소)

구금시설 실태조사 항목 199

머리말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신속히 조사·구제하고 구금시설을 개선하여,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금시설'이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위 구금시설 중 분석의 편의상 행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였는 바, 교정청 산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를 다루었다.

한편 행형법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미결수용실에 준하고 있고,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에게 행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장 시설 및 수용자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과 비교했을 때 처우에 있어서 턱없이 열악할 뿐 아니라,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까지 수용하고 있어 행형법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본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치장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구금시설의 현황보고와 시설 실태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현황보고에서는 현재 교도소 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징벌, 의료, 권리구제, 집필, 계구사용 등의 실태를 중심으로 행형법규와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한편 애당초 우리 모임은 전반적인 구금시설 실태조사를 기획하였으나 자료의 미비,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다음 기회로 미뤄야만 했다. 그러나 애초 기획한 조사항목은 향후 교도소 등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향후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또한 초기 기획에서는 구금시설에 관한 신문기사 모음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실기로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은 교도소 등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었다. 정보의 비공개성은 효율적인 감시와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개선, 궁극적으로 교도소내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본다. 이 보고서가 그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구금시설 현황보고서

...

징벌 집행 . 4

의료 . 16

권리구제 . 21

서신 및 집필권 . 40

계구사용 . 48

징벌 집행

1. 징벌이란?

징벌은 교도소에서 교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하여 과하는 교정처우상의 불이익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교정상의 목적과 질서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제대로 조화시켜내지 못하고 규율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불필요한 제한이 크다 보면 인권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은 구금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벌은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곧 자유형을 본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와 이에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기간, 징벌기관 등을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규칙 제129조), 수행자는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규칙 제3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 행형법(제46조 징벌)에 따르면 수용자가 1)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자해행위, 3)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대만히 하는 행위, 4)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벌규칙)”을 두고 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행형법이 정하는 징벌의 종류(법 제46조 2)에는 ①경고, ②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③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④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⑤ 2월이내의 금치가 있으며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법 제46조 4항).

이러한 징벌에 관한 행형법의 조항들은 1999년 12월 28일 대폭 개정¹⁾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예컨대, 1999년 개정당시 신설된 위법 제46조의 예시적 규정은 이미 '징벌규칙'에 의하여 징벌 해당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징벌규칙에는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고, 징벌의 적용기준, 징벌기관과 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징벌이 곧 형벌은 아니더라도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징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규율위반 행위, 적정절차 등은 법률인 행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에는 징벌의 종류를 5가지로 나열했을 뿐 그러한 징벌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지, 그 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법률으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징벌집행현황

2001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집행되는 징벌 가운데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징벌유형은 '금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는 '금치 2월'이 총 징벌건수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징벌종류별 집행현황

| 구분 연도 | 징벌건수 | 처리 결과 | | | | | |
|--------------|-------|------------------|------------|-------------|------------|------------|-----|
| | | 금치2월 이하 | 금치1월 이하 | 금치20일 이하 | 청원작업 정지 | 도서열람 제한 | 경고 |
| 99년도 | 8,707 | 3,747 (43%) | 3,699 | 293 | 1 | 2 | 965 |
| 2000년도 | 9,994 | 4,588 (45.9%) | 4,161 | 211 | | | 984 |
| 2001년 7월말 | 7,127 | 2,871 (40.3%) | 3,666 | 91 | | | 499 |

1. 우리나라 행형법은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기 이전까지 징벌에 대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는 징벌에 처한다(법 46조)"고 되어 있었으며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행형법 제45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징벌유형²⁾을 살펴보면 싸움·폭행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시 및 입실거부, 또는 담배 등 부정물품 제작·소지로 인한 징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징벌의 사유가 대부분 수용자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보다 교도소, 또는 교도관과의 마찰이 주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징벌 관련 법과 징벌 집행상의 문제점

1) 금치 2월, 가혹한 징벌

징벌을 받는 수용자는 금치, 작업상여금 삭감, 작업정지, 도서열람 제한 등 징벌의 각 종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 외에도, 일상적 처우에서도 심각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되어 있다. 예컨대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르면 관규 위반자는 학과 교육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벌조치로 인해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수형자는 '수용자분류처우규칙'에 근거해, 행형성적에 따라 누진계급이 주어지며 누진계급에 따라 단계별 처우를 받게 되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징벌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진급이 정지³⁾되며 심지어는 강급⁴⁾되기도 한다. 따라서 징벌을 받은 수형자는 징벌외에도 접견횟수, 자치활동, 전화사용, 물품급여, 사회견학, 가석방 회부 등 누진계급에 따른 생활조건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행형법에서 징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5가지이다. 이는 1995년 개정시 9가지로 되어 있던 징벌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감식, 운동정지 등 모두 4가지를 삭제하고, 3월이내의 도서열독 금지를 1월 이내로 제한하여 개정⁵⁾하였다.

그러나 징벌의 종류 가운데 가장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치' 조항

2. 예컨대 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집행된 9,944건의 징벌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싸움·폭행(3,704건), 지시 및 입실거부(1,780건), 부정물품 제작·소지 등(1,069건), 소란·난동(1,026건), 작업거부(471건), 교도관 폭언·폭행(390건), 자살기도(359건), 부정연락(169건), 지정장소이탈(141건), 갈취(49건), 추행(41건), 기타 745건으로 나타났다.
3. 금치처분을 받은자는 '3월이내' 동안 진급이 정지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 33조(진급정지 기간)
4.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자가 징벌종료후 1년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을 때 위 규칙 제35조(강급)
5. 또한 모든 재소자에게 신문구독이 허용됨에 따라 도서 뿐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도 열독을 금지한다고 첨가했다.

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질도 없이 그대로 두었다. 행형법에서는 독거실(징벌실)에 구금하는 '금치'에 대해 징벌의 종류로 '금치 2월 이내'라고만 규정해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치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행형법 시행령(제145조 징벌의 집행)에서 "금치의 처분을 받은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징벌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형법시행령이 상위법인 행형법에서 징벌로 규정한 금치를 '가두어 두는 것' 이상의 의미로 확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운동, 작업 금지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형법에서는 '금치' 그 자체가 징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일체의 수용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으로 해서 모법인 행형법을 현저히 벗어난 규정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벌 목적이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단지 보복과 응징을 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예방한다는 데 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일상적인 처우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만 일어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징벌집행 조항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치의 기간을 "2월 이내"로 둔 점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금치의 기간에 대해 현 규정에는 "금치 2월이내"라고 금치기간에 대해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최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금치는 '금치 2월'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치기간이 2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 심대한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형법시행령에서 금치 집행전과 집행기간 및 집행종료 이후에 반드시 의무관의 검진을 받아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서도 금치의 위험성은 증명된다. 이는 현 행형법(제46조 3항)에서도 규정한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한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이 2000년 3월 개정시 신설되었다(행형법 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②항).

7. 이와 관련하여 "금치 2월 이내"라는 규정은 그 기간이 너무 장기여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징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박재운,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1996년

따라서 현재 2월 이내로 되어 있는(사실상 금치2월) 규정을 개정하여 금치 기간을 대폭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징벌 종류 가운데 1월이내의 신문·도서열람 제한, 작업정지, 상여금 삭감 등이 징벌 효과상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 역시 부분적 금지 등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벌 종류 가운데 '금치' 집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징벌에 속하는 대부분의 행위유형 자체가 금치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 법(규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서는 수용자의 준수사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1호부터 34호까지 열거(제3조 규율)하고 있다. 이어 제4조(징벌양정기준)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징벌의 양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가지의 규율 가운데 이를 어겼을 때 과하는 징벌의 양정이 대부분 '금치'에 해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수용자들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지나치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할 것이다. 예컨대, "실내에서 취침시간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26호)"거나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등에 부착해서는 아니된다(28호)"는 등의 조항은 교도소의 안전과 내부질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오로지 수용자 통제를 위한 목적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징벌 양정기준에서 수용자가 위 26호, 28호의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1월 이내의 금치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점은 가혹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현 행행법에서는 징벌의 종류가 5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규율 위

8. 독일 행행법에서는 금치 기간을 4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9. 34가지의 규율 가운데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징벌의 양정 중 '금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허가되지 아니한 도서 입수, 열람(31호)"과 "취침시간에 독서 신문열람 집필 또는 오락 등으로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32호)"로, 이에 대해서는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또는 경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기타 다른 규율들은 '금치'에 처하거나 '금치 또는 작업정지', '금치 또는 경고'에 처하는 것으로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반 행위가 '금치'에 해당하고 있어 징벌은 사실상 '금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 규칙 제3호 35호에서는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규정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위 34호까지 열거된 규칙상의 행위뿐 아니라 소장의 권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내부 규칙, 이에 따른 교도관의 일체 지시가 규율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 추상적, 애매모호한 규정은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징벌 집행을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징벌남용은 수용자들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교정처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징벌내용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징벌은 행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용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율'과 위의 애매모호한 규정은 전면 삭제해야 할 것이며 징벌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징벌 양정기준 역시 더욱 완화된 내용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3) 징벌에 관한 재심, 불복절차가 없다.

현재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징벌 선고에 대한 수용자의 재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¹⁰⁾는 점이다. 심지어 규칙에서는 징벌협약의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규칙 제7조 2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징벌조사 기간 중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징벌 선고를 받은 징벌자는 사후에 권리구제(예컨대 징벌기록 말소, 행형성적에 반영되므로)를 위한 방편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사후구제를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해도 접견, 서신, 집필이 금지되는 등 의

10. 198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보호원칙, 제30조 2항)에서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는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급기관에 대한 재심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보호원칙은 가장 최근에 마련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최저기준규칙과 더불어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원칙 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준칙이다.

부와의 교통권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하며 소송을 제기하리란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징벌처분의 경우 그 기간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처분이 정지되는 등의 이익이 있을텐데 집행 등의 권리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이런 소송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개정된 행형법 시행령(제145조)에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라해도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장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징벌을 받은 이가 징벌에 대한 불복 행위를 하기위해 접견, 서신수발을 청구한다해도 소장이 과연 이를 허가할 것인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현재 행형법상의 청원권 행사,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로는 억울하게 징벌처분을 당한 수용자를 구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다른 구제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규 하에서는 징벌혐의자 또는 금치처분 중에 있는 자가 부당한 징벌조사 또는 금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데(공무원들로서는 현행 법규를 준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법규 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구제수단을 마련해 두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징벌혐의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나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그리고 징벌조사 중 또는 징벌집행중이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면전 진정을 원한다고 교정직원에게 알리면 직원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현재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징벌의 불복과 관련하여 교도소의 상급기관인 교정청 등에 ‘징벌 재심위원회’를 두어서 징벌 결정이후, 불복 수단의 절차로서 재심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정지신청의 기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는 9조 3항에서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행형법에는 징벌조사 중 또는 징벌 집행 중 집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인권위원회법이 신법, 특별법이므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복수단 또는 이의제기는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거나 또는 가족, 대리인에게도 그 신청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4) 징벌 절차상의 문제점

징벌은 수용자가 처우상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의결하기 전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최저기준규칙(제30조 2항)에서는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사실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벌 규칙은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부분, 예컨대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등의 부분에서 징벌혐의자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진전된 방향으로 개정, 명문화¹²⁾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위원회의 구성¹³⁾을 볼 때, 과연 이러한 규정자체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벌은 주로 소측과의 마찰, 대립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징벌혐의자가 자신을 변호할 제도적 장치가 ‘출석’만으로는 미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징벌위원회 출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징벌선고 후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거나 하는 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한 한번 징벌을 받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우 상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므로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징벌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징벌혐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12.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때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8조4항)”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한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조2항)”

13. 형법 47조(징벌위원회) ② 징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1.5, 99.12.28>

대리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벌위원회 구성에서도 징벌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닐 수 있으려면 교도소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1999년 12월 개정된 행형법에서는 당해 교도소 직원 뿐 아니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개정하여 외부인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을 소장에게 두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선정할 때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인권관련 전문가를 선정의 주요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징벌 해당 행위의 내용에 따라 징벌권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점이라 생각되는데 예컨대 독일 행형법에서 “징벌권은 소장에게만 있다”(제10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형자의 징벌사유가 해당 시설의 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독기관이 징벌을 결정한다”(제10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5) 징벌 조사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

한편 징벌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규율위반으로 징벌혐의를 받게 된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은 수용자와 지위에 있어서 다른 점이 거의 없고, 또한 조사기간 중에 처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 징벌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이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징벌규칙’에 명시됨으로 인해 위헌적인 요소조차 있다고 보인다.

현 행형법에는 징벌혐의자(조사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않았으며, 다만 행형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해당 교도소에서는 독거실인 조사실에 징벌 혐의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중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만으로 위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징벌규칙(제7조)에서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의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결과적으로 이의 남용을 부추키게 될 것이고, 더구나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징벌혐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조사기간이 곧 징벌(금치)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

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규칙 가운데 “조사중인 수용자나 금치 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 시간 이외에 침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기상 후부터 취침시간까지 바른자세로 앉아서 반성해야 한다(징벌규칙 11조 준수사항)”는 규정도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2001년 1월 18일 개정 이전에는 ‘금치 처분을 받은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시 ‘조사중인 수용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징벌 조사중인 수용자’와 ‘징벌처분자’의 개념을 아예 불명확하게 만든 ‘개약’이라 할 수 있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운동도 금지되는데,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바른자세’로 앉아서 반성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고 특히 ‘조사중인 수용자’는 이른바 ‘미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바른자세로 앉아서 반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조사가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 않나 의심을 하게 한다. 아울러 수용자가 규율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징벌조치를 집행하는 것 외에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징벌집행상의 문제점 - 과도하고 자의적인 집행

징벌 관련 법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항이 집행상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산재해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몇가지 점에 한정해 문제점을 적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행형법상에는 계구¹⁴⁾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¹⁵⁾는데도 실제 소에서는 ‘규율위반’을 적발할 시 대체적으로 포승이나 수갑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해나 도주 우려 등 강제력이 요구되는 때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함에도 일단 “묶고 봄”으로써 계구 사용자체가 징벌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징벌관련 법에는 징벌을 연속하여 집행할 경우 최장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징벌규칙(제5조 징벌의 기준)에 따르면 “징벌 집행중”에 규율위반 행위가 있을 때 1월 이상 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징벌규칙에는 가장 엄한 징벌이 ‘금치 2월’로 되어 있지만 징벌중에 또 징

14. 행형법 제14조 (계구) 2항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15. 행형법 14조 3항 99년 12월 28일 신설

벌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사실상 징벌의 시일은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문제수로 낙인찍힌 재소자의 경우, 소추에 의해 무한정 징벌에 처하게 되거나 징벌실에 수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치 2월'도 상당히 긴 기간에 해당함에도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금치 2월의 징벌을 3, 4회 이상 연속하여 집행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제재 조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가혹한 징벌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징벌은 연속해서 집행할 수 없고, 징벌 집행을 완료한 후 다음 징벌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컨대 "징벌 종료후 최소 7일 이내에는 다른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법 시행령에 명시¹⁶⁾된 "징벌(금치) 집행전 의무관의 사전 진단"이라는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도,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징벌 종료후 추가 징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실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징벌실은 0.53평~1.74평의 규모로 내부구조는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며, 현재 독거실 가운데 580개를 징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중방¹⁷⁾은 이미 폐쇄되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징벌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실과 징벌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창문이 있다해도 아크릴 판으로 막아두어서 햇빛이 차단되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징벌실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심지어 출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안과 지하실에서 가혹

16. 최저기준규칙(제32조 1항)에서는 "금치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관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동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해야 한다(제32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현 행정법에도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행정법 시행령 제145조3항)"고 규정하고 있고 금치 집행중에 의무관은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해야 하며(동 시행령 제146조), 금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이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48조)"고 규정하고 있다.

17. 폐쇄독방- 이중방은 복도에 있는 문을 열면 감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은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거의 통풍이 되지 않는 작은 감방이 몇 개가 달려 있다. 이중방은 밥을 넣을 수 있는 구멍만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떠한 환기통도, 채광창도 없다.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중방은 폐쇄되었으나 일반 독거실과는 다른 형식의 폐쇄독방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보안과 지하실이나 이중방과 유사한 징벌방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폐쇄를 권고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행형법에서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명문화¹⁸⁾되어 있다. 그러나 징벌규칙 제10조(양형자료의 통보)에 의하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벌에 처한 때는 규율위반 사항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검사 또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이중처벌’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교도소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등의 조치로 응분의 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폐지가 시급하다.

18. 행형법 제46조 3항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99년 12월 28일 개정시 비로소 신설되었다.

의료 실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건강보호 및 치료에 관한 국제기준들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것과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일반사회인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에서는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기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제62조).”고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질병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 수준 역시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교도소내 보건의료의 윤리적 및 조직적 면에 관한 권고안(1998)’에 따르면 단순한 의료권 보장을 넘어서 일반사회와 교도소 내에서의 의료행위가 동일한 윤리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수용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에는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예방진료 및 건강보호가 수반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에서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고(행형법 26조)”,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법 제 29조)”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건강보호와 질병치료를 구금시설(국가)의 책임하에 두고 있으나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현재 구금시설 의료실태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의료예산과 의료인력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진료실태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법과 실무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인력 실태와 문제점

법무부에 따르면 2001년 9월 17일 현재, 전국교도소 의료관계 인원은 130명(정원 142명)이다. 아래 <표1> 전국 교정시설 의료인력¹⁾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정원 64명에 비해 54명이며 이 가운데 구금시설에서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실제 상근의사는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는 64명(정원 64명), 약사는 2명(정원 3명),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중보건의²⁾는 23명이다.

2001년 7월 현재 구금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54명을 전국 44개 구금시설 수용자 62,724명(2001년 7월 31일 현재 인원)과 대비해보면 의사 1인당 1,161명의 재소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0년 법무부 통계(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1일 재소자 진료인원이 24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술직 등 의료보조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1. 교도관직무규칙(제95조)에 따르면 ① 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등 의료에 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95.9.11> ② 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 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개정 95.9.11> ③ 간호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한 영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95.9.11>고 의료직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동 규칙 제103조(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에서는 "①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9.11>"고 규정함으로써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의료업무의 공백을 매꾸기 위한 방편으로 전염병·예방, 소독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비전문인력인 정복교도관이 어느정도의 의료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또한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4호에서는 "기타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시설"에 공중보건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전국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1년 7월 현재)

| 구분 | 의료인력(명) | | 정원별 직급(명) | | | | | | 비고 |
|-------|---------|-----|-----------|----|----|----|----|----|----------|
| | 정원 | 현원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
| 계 | 142 | 130 | 4 | 46 | 17 | 22 | 23 | 30 | |
| 의사 | 64 | 53 | 4 | 46 | 14 | | | | 비전암10 |
| 약사 | 3 | 2 | | | 3 | | | | |
| 간호사 | 65 | 65 | | | | 13 | 22 | 30 | |
| 의료기술직 | 10 | 10 | | | | 9 | 1 | | |
| 공중보건의 | | 23 | | | | | | | 보건복지부 지원 |

또한 의료직 공무원의 근무의 시간인 주말 또는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시 구급시설에서 시급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점은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구급시설 사망사건 등 의료사고는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고 있다. 구급시설에서는 “밤과 주말에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떠돌 정도이다. 교도관 직무규칙(제97조 2항)에서는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라 할 지라도 지체없이 출근하여 진찰, 진료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구급시설에 평균 1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급시설의 의사는 24시간을 ‘지체없이 출근하여 진찰’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총원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항은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한 ‘응급환자’라는 판단을 당직 교도관의 보고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결제 등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시급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구급시설 내의 전문적 의료인력은 수용인원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집단 수용시설에 걸맞는 질병예방은 물론이고, 시기 적절한 치료와 진료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 비율이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서 의사가 책임성있게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무리한 조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의료직 공무원 근무시간에도 진료와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인데 근무의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 비율에 맞는 의료인력의 확충³⁾이 절실하며, 응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사 또는 의무과 직원 등 전문의

료인력의 24시간 상주가 요구된다.

특히 약사들의 증원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구급시설에서는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 등의 업무가 교도관직무규칙(제95조2항)에 따라 약물담당 공무원에게 맡겨지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⁴⁾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며 조제, 투약 등의 조치를 약사가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의사들이 교도소라는 특수환경과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구급시설 내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현실적인 보수체계나 근무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전문의료인력 확충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 공중보건의를 현실적으로 증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비 현황과 문제점

법무부는 재소자 1인당 책정된 의료비를 2000년도 37,000원에서 2001년도에는 48,000원으로 2002년에는 5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아래 <표2> '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비는 각 구급시설에서 주로 의약품 구입 및 자체 치료비와 외부병원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약품 구입이나 외부병원 진료비는 가장 선차적인 집행내역이라 하겠지만, 실제 배정된 의료비로는 구급시설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설비 및 장비⁵⁾ 등에 대한 투자는 고려대

- 3).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4년까지 의료인력 729명(의사 197명, 간호사 457명, 약사 41명, 의료기사 34명)을 연차적으로 확충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2000년 국감자료)
- 4).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21조 1항)" 다만 제5항 10호에서는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법무부는 구급시설에서 의료장비 부족 등으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점에 대해 시설, 장비를 사회의 개인병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2000년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이 56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한편 의료 장비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제22조2항)에서는 "병원설비가 시설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장비보유 문제와 아울러 장비 및 시설 등을 전문인력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된 직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 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표2> 의료비 집행현황(2001년 6월말 현재)

| 2001년도 의료비 배정액 | 집행액 | 집행내역 | |
|----------------------------------|-------------|------------|------------|
| | | 외부병원 진료비 | 의약품비 |
| 28억 6,491만원 (수용자 1인당 48,000원) | 13억 3,055만원 | 6억 9,620만원 | 6억 3,435만원 |

또한 아래 <표3>에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현황'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사회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이 1999년도에는 수용자 부담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수용자 부담이 국가 부담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금시설에서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구금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수술 등의 처치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볼 때 치료비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재소자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까닭에 외부병원 이용시의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사회인 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책정된 의료비로는 응급환자나 영치금이 없는 환자 모두를 치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수용자 본인 부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각 구금시설에서 외부병원 치료를 꺼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표3> 최근 3년간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현황

| 년도 | 인원(명) | | | 진료비 부담주체(천원) | | |
|---------|-------|-------|-------|--------------|-----------|-----------|
| | 계 | 미결 | 기결 | 계 | 국가부담 | 수용자부담 |
| 1999년 | 7,978 | 2,586 | 5,329 | 2,156,346 | 987,340 | 1,169,006 |
| 2000년 | 9,027 | 2,677 | 6,350 | 2,273,568 | 1,184,755 | 1,088,813 |
| 2001년6월 | 4,475 | 1,211 | 3,264 | 1,217,133 | 696,201 | 520,932 |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이루어졌지만, 국민건강

- 6)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급여의 정지)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 따르면 재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강보험법에 따라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도소 등 시설에 있는 수용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가 자비로 외부병원을 이용할 때도(혹 국가부담으로 진료비를 쓴다해도 사회인에 비해 많은 진료,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보험제도 적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 즉 재소자로 통칭하여 미결과 기결을 구분하지 않은채 동일하게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권 보장과도 어긋나며, 일반 사회인과 다른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설령 그 이유가 수용자의 보험료 미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급여를 정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재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가족이 있는 재소자의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이 없는 무의탁자 등은 사회와 똑같이 의료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용자에 대한 진료실태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

1)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 7).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국감자료(2000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결수용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경제활동과 소득이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및 징수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구금상태에서 정상적인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건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 가운데 건강검진 문제 역시 사전에 병을 예방하고 병을 발견하여 시급히 적절한 치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행형법에서는 신입자의 건강진단에 대해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법 8조2항8)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진 시행시기에 대해 행형법시행령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에서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법무부 훈령 제174호)에서는 위 대상별로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이들에 따르면 신입자 건강진단 의 일반적인 건강진단은 이와같은 시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검진 내역에 대해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법무부훈령 제174호)’에서는 건강진단의 범위를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신체 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 다리, 청력, 시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지극히 기초적인 신체검사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장기 수용자의 경우 쉽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 치과질환 문제나 기초 암 검진 등 장기수용으로 인해 방치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검진 항목을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실질화 시켜서 최소한 소변검사, 피검사 등을 통한 검진 및 x-ray 촬영 등의 항목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건강진단 규칙에서는 정신건강진단⁹⁾에 대해 지능, 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규칙 제4조)하고 있으며 방법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정신과적 관찰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의학분야의 전문의사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실시하게 한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곁으로 나타나는 병에 대한 진료와 치료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8). 최저기준규칙(제24조1항)에서는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조속히, 그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행형법에서는 1995년 들어서야 신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항을 신설했다.

9). 최저기준규칙에는 “모든 시설에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22조 1항)”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구금시설에서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와 치료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로부터 정신감정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실제 출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정신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행행법에서는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건강진단'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신체 및 정신" 건강진단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외부시설(사회병원) 이용 문제

최저기준 규칙(제22조 2항)에서는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 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행행법 제 29조(병원이송)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¹⁰⁾하고 있다.

이는 적당한 치료를 받기 위한 외부병원 이송문제가 수용자의 권리가 아닌,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장으로부터 그러한 '결재'를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도관의 부족과 보안상의 이유를 문제로 외부병원을 이용하기란 좀체로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실제 병원이송은 긴급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행되는 만큼 '수용시설의 설비부족으로 인해 수용자의 치료가 불가능할

10). 또한 행행법 제28조는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할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해당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비부담으로 사회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비부담 치료'는 재소자의 건강보호와 질병치료는 국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자비부담 치료'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독일의 경우처럼 외부'진찰'은 자비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즉 진찰료는 자비로 부담하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한영수, 2001, 행행에서의 인권보호대책,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인권세미나 자료집). 그러나 현재 책정된 의료비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도 및 정책적 고려없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오히려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한편 국제원칙에서는(최저기준 규칙 91조) "미결수용자"에 한하여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수용자들의 의료 청구권(권리)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심도깊은 논의가 요청된다.

경우, 외부 일반병원에 지체없이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¹¹⁾.

또한 행형법에서는 "외부병원에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29조 2항)"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병원이송 문제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보다는 관리 및 계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실제 구금시설에서는 계호상의 문제를 들어 외부진료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4> 교정시설 진료인원 현황

| 연도별 | 진료인원 | 진료내역 | | | | 외부병원 진료인원 |
|--------|-----------|-----------|---------|--------|-----|--------------|
| | | 투약 | 처치 | 외부초빙 | 수술 | |
| 2000 | 4,747,479 | 4,356,321 | 354,728 | 36,048 | 382 | 9,027 |
| 2001.6 | 2,267,562 | 2,085,458 | 163,566 | 18,350 | 188 | 4,475 |

3)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의약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렵다.

재소자 의약품관리규정(예규관련 제377호)에 따르면 의약품에는 관급용, 비상용, 자변약품, 차입의약품 등이 있고, 의약품의 차입허가(제21조)에 대해 위 규정에서는 "소장은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의약품의 차입 신청이 있을 때는 조제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토록 하고, 의무관, 약제관 또는 전문가의약품감정을 받은 후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감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진료 또는 자신의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 의료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차입허가가 실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규정은 "소장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소장에게 막강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의약품 차입허가에 대한 전결권이 의무과에 주어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무과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차입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11)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교도소 담당의사는 교도소 등에서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행형법(구 행형법) 제29조에 의하여 즉시 소장의 허가를 얻어 치료가 가능한 외부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서울지법, 1996.2.14. 선고 94가합25631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재소자의 처지, 경험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한방,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재소자의 경우 수감 전에 이미 시행해왔던 요법이라 할지라도 허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여성재소자에 대한 의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제23조)에서는 “여자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형법등에서 여성재소자에 대한 언급은 “임산부의 정의를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행형법 제30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을 위한 의료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교도소에서는 대부분 병사가 남사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서 임산부는 물론 여성의 경우, 질병에 걸려도 병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일반사동에 수감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의무과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도 계호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의료나 생활상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사동에 병사에 준하는 시설과 환경설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난방, 검진 등)이 요구된다. 한편 유일한 여성 전용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여성의학의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구급 여성 수용자의 경우 유발성 여성질병(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수용환경 마련 및 전문적인 의료교도소 신설 문제

현재 44개의 구급시설 가운데 의료 전담교도소로 진주교도소가 있으며 주로 결핵,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진주교도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8월 30일 현재 수용인원 1,342명(정신질환 149명, 폐결핵 64명)인데 반해 의료인력 현황은 의사 5명, 간호사 3명, 의료기술직 2명으로 분포되어있어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치료목적의 교도소치고는 의료인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순천교도소 소록지소는 한센병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외 의료만을 전담하는 교도소는 없는 실정인데 장기적인 입원치료와 전문적인 진료 확대를 위해 의료전담 교도소¹²⁾ 설립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의료교도소와 관련하여 각 지방 교정청별로 의료전담 교도소를 1곳씩 설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구

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수용환경에 대한 규정 가운데 현재 행형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시행령 제31조(혼거수용)에서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혼거수용”, 제119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있다. 장애인 수용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법무부에서는 형이 확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수용교도소를 지정하여 지체 부자유자는 안양, 광주, 부산, 청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농아자는 안양교도소에, 시각장애자는 청주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고 있다.

12). 의료교도소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캐나다는 52개의 교정시설이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급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각 구역마다 수용자의 일반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입원시설이 갖추어진 정신센터가 하나씩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29개의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개의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병원수준의 시설이 있으며, 8개의 도시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해 보안을 갖춘 병원시설이 각각 존재한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1994년에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책임이 보건성으로 이관되어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정시설은 가까운 공공병원과 협정을 맺어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외래 진료를 책임지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의료상담, 입소시 건강검진, 투약, 치과진료, 전문의 진료 등 교정시설 내 의료를 비롯해서 근무의 시간의 응급호출을 병원에서 담당하며, 병원입원이 필요할 때 책임지고,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종명,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2.

권리구제수단

교도소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회복할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법상의 권리인 청원 및 소장면담이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고소 및 고발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수용자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의미 및 그 실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청원

1) 청원의 의미

수용자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¹⁾.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면 소장이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순회점검공무원²⁾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해 이루어진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청원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청원권과 같은 내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법무부

1). 행정법 제6조

2). 순회점검공무원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2년에 1회 이상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은 해당 국가기관이 청원의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차이가 있다.

2) 청원관련 법규 및 실무의 문제점

청원은 수용자가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행형법에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청원권 행사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이유를 행태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입소시 고지

수용자들이 범죄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당연히 보장될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기도 하나,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할 것이다. 1999년 개정된 행형법에는 신입자에게 청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나³⁾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⁴⁾에서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 허가되어 있는 방법, 기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읽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거실 내에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수용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교정당국은 입소자에게 청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⁶⁾.

3). 행형법 제8조의 2

- 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41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 5).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02. 2. 28.부터 2002. 6. 14. 까지 청 78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입소시 청원등 불복신청을 할 권리에 대해 고지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1명이 '그렇다'고

② 청원서 집필 및 발송

수용자는 교도관에게 청원서 집필신청을 하여 집필 허가를 받고 작성한 뒤 이를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 개정 전에는 청원서 집필신청을 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가 폐지됨으로써 청원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청원서 집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청원서 작성도 집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 의하여 청원 역시 집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청원처리지침'에는 수용자로부터 청원 집필신청을 받은 담당교도관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청원서 집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교도관이 소장에게 집필 신청 자체를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소장이 집필 허가를 하지 않아 청원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용자로부터 청원서 집필 허가 신청을 받은 교도관이 집필 허가가 나기 전, 청원사유를 알기 위해 수용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청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집필허가를 늦게 내주어 수용자로 하여금 사실상 청원을 포기하게 하고, 수용자들이 단식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이후에야 비로소 집필허가가 나기도 한다.

③ 청원 처리 기간

행형법상 청원은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결정서를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청원법에는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⁸⁾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원 역시 신속하게 심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도소 등의 처우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가 신속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⁹⁾, 신속한 청원의 처리

답변하였고, 55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고지받은 자들 중 문서로 고지받은 자는 경우 7명에 불과했다.

7). 수용자청원처리지침 제5조 ① 수용자가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교도관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당해 수용자에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이를 개봉하거나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된다.

8). 청원법 제9조 제4항

9). 사법적 구제절차가 신속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이유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장 등의 소송서류 집필과 발송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법구제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¹⁰⁾.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이 수용자로부터 청원을 받으면 상당기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원의 결과를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수용자의 경우, 청원 결과가 늦게 도달함에 따라, 제소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¹⁾. 법률 개정을 통해 청원 처리기간과 재결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하에서도 청원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④ 청원의 처리

청원에 대한 결정은 각하, 기각, 처분취소 또는 변경 등이 있는데¹²⁾, 청원 처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사항을 접수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¹³⁾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1999. 부터 2001. 7. 까지의 청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¹⁴⁾.

- 10).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④ :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령형사시설규칙 제42조 ④ : 행정당국에 제출된 요구 또는 불복신청은 즉시 당국에 의하여 검토되고,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피구금자에게 회답되어야 한다.
- 1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청원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12). 수용자청원처리지침 제7조 ① 청원이 부적법하거나 증대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한 청원, 2.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3.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 4.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송중에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5.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제출한 청원 ② 청원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청원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소장 등에게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3). 조사관이 교도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때, 교도관에 대한 조사에만 그치거나 이미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시설의 교체 이후의 상황만 조사하여 실효성 있게 수용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 분류 결과 | 계 | 가석방·감형 등 요망 | 의료조치· 이송등 요망 | 부당처우 개선요망 | 기타 |
|----------|-----|----------------|-----------------|--------------|-----|
| 계 | 653 | 42 | 220 | 201 | 190 |
| 처우반영 | 55 | 4 | 27 | 11 | 13 |
| 기각·각하 | 464 | 34 | 155 | 149 | 126 |
| 취하 | 78 | 2 | 21 | 28 | 27 |
| 심사중 | 56 | 2 | 17 | 13 | 24 |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 2년 6개월 동안 접수한 청원 건수가 653건인데, 이중 55건만 처우에 반영되었고, 464건이 기각, 각하되었다. 2001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청원의 요건을 결하여 형식적으로는 기각 또는 각하로 처리되더라도 대부분 처우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청원이 사법적 구제절차도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청원권의 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은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원의 범위 문제이다.

행형법에서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용자청원처리지침에서는 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한 청원,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③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 ④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송중에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⑤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제출한 청원의 경우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위 ②항(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근거로 행형법에서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 자신과 관련한 처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에서 청원자와 관련된 사항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으며¹⁵⁾, 교도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수용자의 처우와 밀접한 관

14). 2001년 국감자료

15). 청원법 제4조 : 청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원의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청원법 제5조) ② 이중 청원의 금지 :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음(청원법

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의 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②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③항(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의 남용으로 교도관에 대한 청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사유를 각하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심리하고 이유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문제

순회점검제도는 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라기보다 법무부장관이 소속기관인 교정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장으로서 교정행정을 감독·지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내용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¹⁶⁾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구제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기타

그 외에 청원권 보장을 위하여, 본인 뿐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변호사도 수용자의 위임을 받아 청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고,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량에 의해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소장 면담

재소자는 교도소 등의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과 면담할 수 있다. 소장과 면담은 재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재소자가 신청한 경우 소장은 반드시 면담하여야 한다. 소장은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하여야 하고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¹⁷⁾.

제8조) ③ 모해의 금지 :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 할 수 없음(청원법 제10조)

16). 수용자 및 출소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순회점검공무원이 교도소를 방문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7). 행형법시행령 제9조

소장의 면담은 처우에 대한 불복 이외에 일신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로 교정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면담 신청을 하여도 소장에게 제대로 보고 되지 않거나, 소장에게 보고 되더라도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반 소송의 문제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여, 수용자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제한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주체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법적 구제절차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불복수단의 고지와 관련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규칙 및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수용자 입소 시에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에서도 청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명시하면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도 고지하도록 하였는데, 청원 이외의 불복 수단(일반 소송 등)에 대하여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집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행형법 및 '재소자 집필 제도 운영개선'에 의하면 소장 작성 역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부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불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도소 등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재소자 집필 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 불허 사유 중 '교정직원이나 타재소자 등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 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려는 내용', '교정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이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간섭 또는 왜곡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교도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 청원, 국가배상을 청

구하고자 할 경우 교도소측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 후, 교정직원 음해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5.19.선고 99가합35 판결),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교도소 등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때 집필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의 제한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¹⁸⁾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¹⁹⁾에서 사법적 구제절차를 위한 집필과 관련해서는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행형법도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²⁰⁾.

3) 변호사의 조력과 관련하여

헌법 제27조에서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②법률에 의하여, ③신속한 공개재판과 ④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공정한 재판이란 정당한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충실한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실한 공격과 방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보

18).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9). 유럽형사규칙 제42조 ③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검열되지 않고 봉서로써 중앙행형당국, 사법기관 또는 기타의 권한을 갖는 당국에 대하여 요구 또는 불복신청이 허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20).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서신검열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기관과 사인에 대한 서신을 따로 분리하여 사인에 대한 서신의 경우에만 검열을 실시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서신의 경우에는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보낼 서신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없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인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할 뿐만 아니라 유효 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과 같은 관공서에 부당한 처우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에도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와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불복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저기준규칙 등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는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행형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서신검열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장하여야 한다.

행형법은 미결수가 그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교환하는 서신에 대해서 검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²¹⁾. 그러나 수행자(기결수)에 대해서는 법에 적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도소 등은 기결수와 변호인(대리인 변호사)과의 서신을 모두 검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와 변호사 사이에 교환되는 서신이 검열됨으로써 사전에 소송전략 등이 교도소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교도소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밝히는 내용을 기재하여 변호사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집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 소송이나 불복절차에서 변호사와 교환하는 서신에 대해 검열을 금지하도록 행형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 행형법 내에서도 서신검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²²⁾.

또한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결수인 수행자가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일반 면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의 수행자 접견시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고²³⁾, 시간도 제한하고 있으며²⁴⁾, 접견횟수도 제한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접견이 수용자의 재판준비를 위해 필수 요건

21).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22). 교도소측의 서신발송불허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위 발송불허 처분된 서신을 변호사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발송불허처분을 당한 서신이라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사안에서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서신의 원본 내지 필사본의 발송 목적은 당시 원고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신발송불허행위에 관한 소송제기 여부를 협의하고 소송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의 위 각 서신 발송과는 전혀 그 목적을 달리 하므로, 단지 종전에 발송거부된 서신과 같거나 동일한 내용의 문서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발송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위 각 서신발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룰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소송의 반대당사자가 될 지위에 있는 피고측이 위 집필문서가 첨부된 변호사에 대한 서신의 검열 및 변호사와의 접견대장의 열람을 통하여 원고가 위 집필문서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발송하여 소송자료로서 전달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주요한 증거방법인 위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라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57883 판결).

23). 행형법 제18조 제3항 :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4). 행형법 시행령 제54조 :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접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수형자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해 당해 민사사건의 상담 및 사전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접견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의 전적인 자유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접견시간의 제한이 소송준비를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직접의 제한이고 ... 본건에서 접견시간을 30분 이내에 제한하는 것이 처우상은 물론 형무소 내의 규율질서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쿠시마형무소 소장이 본건 각 접견에서 30분 이내로 하는 조건을 단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다²⁶⁾”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무시한 채 접견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교도관이 입회함으로써 수형자가 위축되어 법률상담이나 소송준비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입증의 어려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밀폐성 문제이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도관 이외에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가사, 교도관 이외의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포기하거나 소 추과 협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교도소 측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도소 측은 신분대장, 서신대장 등 수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교도소 측은 그것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²⁷⁾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불허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서 1998. 11.경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인권단체에서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에서 접견의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제4급 수형자는 매월 4회, 제3급 수형자는 매월 6회, 제1급 수형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http://www.nichibenren.or.jp/hrsympo/manual/case-e.htm>

27). 위 법률 제7조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

위해 전주교도소측에 망인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전주교도소측은 위 자료가 위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정보들이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 자료이거나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자료일 뿐이고 교도소의 정비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주교도소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비공개대상정보를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²⁸⁾.

4. 고소, 고발의 현황

1998. 1. 부터 2001. 7. 현재까지 수용자가 교정직원들을 폭행하여 입건 당한 숫자는 다음 표와 같다²⁹⁾. ³⁰⁾

| 연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 7. |
|----|-------|-------|-------|----------|
| 건수 | 23 | 91 | 67 | 27 |

그리고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해 폭력, 폭언, 협박, 기망, 기타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아래 관련자 전원 징벌 조치)³¹⁾.

| 1999 | 2000 | 2001. 7. |
|------|------|----------|
| 306 | 390 | 327 |

한편, 1997. 부터 2001. 8. 까지 폭행,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직원이 수용자들로부터 고발당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³²⁾

28). 전주지방법원 1999. 12. 28. 선고

29).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와 교정직원 사이의 폭행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건되지는 않더라도 발생한 폭행 건수는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0). 2001년 국감자료

31). 2001년 국감자료

32). 2001년 국감자료

| 연도별 | 건 수 | 처리내역(명) | | | | | 비 고 (수사중) |
|---------------|-----|---------|------|-----|--------------|-----|--------------|
| | | 기 소 | 기소유예 | 무혐의 | 기 타 (각하등) | 계 | |
| 1997 | 493 | 3 | 23 | 241 | 168 | 435 | 58 |
| 1998 | 620 | 12 | 29 | 191 | 192 | 424 | 196 |
| 1999 | 714 | 6 | 18 | 260 | 328 | 612 | 102 |
| 2000 | 970 | 7 | 39 | 439 | 332 | 817 | 153 |
| 2001 (1-6) | 690 | 1 | 35 | 255 | 294 | 585 | 105 |

위 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교정직원들에 대해 한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징벌처분결정이 나고 입건되는 사건수가 많은데 비해, 교정직원이 수용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많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교정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것과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용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 등 다른 구제수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진정할 수 있는 자는 인권을 침해당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³³⁾. 그러므로, 행형법에서의 청원과 같이 자신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각하 당할 염려가 없으며, 청원과 달리 수용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다.

2) 진정권 보장³⁴⁾

입소시 고지와 관련하여 : 수용자는 처음 입소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의의와 방법에 대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는데, 행형법에는 청원의 고지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서를 시설수

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34). 청원과 비교하기 위하여 '1. 청원'에 기재된 목차에 따라 검토하였다.

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집필 및 발송과 관련하여 : 청원이나 소장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진정함 옆에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³⁵⁾ 진정서 작성을 위하여는 소장의 집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³⁶⁾. 그리고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서신교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³⁷⁾.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행형법시행령 등은 행형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징벌혐의로 조사받거나 금지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집필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징벌조사중이거나 징벌 중에도 진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용자의 권리를 회복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구제수단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처리 기간의 문제 :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진정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긴급구제조치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⁹⁾.

처리와 관련하여 : 청원은 국가기관이 청원의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차이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정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35).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36). 진정서 작성을 위한 집필허가 유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서 등의 집필 허가 과정에서 집필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허가를 늦게 내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를 참관해 본 결과 진정함에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2항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3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서신 및 집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18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고,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 33조의 3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신도 집필에 포함되나 '교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필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보고서에서는 행형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신 및 집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규정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서신 및 집필관련 행형 법규의 내용

1) 서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서신교환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경우 매월 4 회로, 미결 수용자의 경우 매월 1회로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해야 하는데,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상당한 기간 소지할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가 변호인과 교환하는 서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신을 검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 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소장은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①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②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③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④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한다.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하되 자비부담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관급할 수 있고,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집필

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집필할 수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집필실·거실 또는 작업장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집필한 문서는 수용자가 외부 발송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등에 영치하여야 한다. 만약 수용자가 외부 발송을 원하는 경우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집필 내용이 ①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④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⑤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외부발송을 허가할 수 없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집필용구의 구매비용은 자비부담으로 하나 자비부담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집필용구를 관급할 수 있고, 일정수량의 필기구 및 집필용지를 소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집필문서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집필관련 법규 및 실무의 문제점¹⁾

- 1).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이 1995년 6월 25-30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후 보고서(일면 '후세인 보고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서 후세인은 '교도행정제도가 대체로 1923년 일본 점령기에 공포된 행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형법에 의한 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재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개선점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알게 되었다',

'황석영(후세인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황석영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감중에 있었다)씨가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 심지어 노우트를 작성하거나 출판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글을 쓰는데도 그는 먼저 그가 쓰려는 주제를 신고하고, 교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집필할 주제를 알리면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교도당국이 그에게 종이를 주었다. 더구나 그가 완성한 글은 교도당국에 의해 검열되었다. 황씨가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글을 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집필하기에 적절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행형법에서는 서신이 먼저 규정되어 있지만 서신의 교환은 집필을 전제로 하고, 집필에 관한 규정이 서신에 준용되고 있으며, 적용에서도 집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²⁾.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그 제한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하거나 작성된 문서의 발송을 불허할 수 없다.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체적인 집필권 침해 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필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 둘째, 집필은 허가하였으나 발송을 불허하는 경우, 셋째, 집필용구 및 집필 문서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1) 집필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

행형법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필할 수 있고,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³⁾에는 집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필권도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사유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는 집필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②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거나 도주 등을 모의하려는 내용, ③타재소자 등과의 부정연락 등의 방편으로 악용하려는 내용, ④교정직원이나 타재소자 등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 ⑤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려는 내용, ⑥교정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이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간섭 또는 왜곡한 내용, ⑦암호 등으로 작성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어로 작성한 내용, ⑧기타 수용생활에

그리고 후세인은 위 보고서에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기본원칙(1990년)”을 인용하였는바, ‘구금사실에 의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소자는 관련 국가가 가입한 이상 다른 유엔협약들에 기한 권리를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부속의정서 등에 규정된 인권과 핵심적인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5. 19. 선고 99가합35

3).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다.

집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질서를 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교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⁴⁾ 제한할 수 있는데, 위 ④, ⑤,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수용질서나 교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도소 등에서는 위 규정으로 집필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용자가 교도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집필신청을 하는 경우 교도소측은 '교도관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집필을 불허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교도소의 잘못된 관행이나 시설하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려는 경우 교도소측은 '교정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이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간섭 또는 왜곡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집필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행형법 제6조는 청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 이외의 방법으로는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내용을 집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원'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 '집필제도 운영개선'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서신 등으로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서신의 내용이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발령한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안'에 의하여 감호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

금치 기간 및 징벌 조사기간 중의 집필제한은 외부와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으로 위헌소지가 있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⁶⁾에서 징벌집행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은

4. 교화를 위해 집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실제 있을지 그 예를 찾지 못하였는데, 다른 국제인권원칙에서는 교화를 이유로 집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5. 대우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5. 19. 선고 99가합35 판결
6.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② :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본권제한 원리에 반하며, 징벌처분 그 자체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과잉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징벌 조사기간 중의 집필 제한도 징벌규칙⁷⁾ 및 재소자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권제한원리에 반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피구금자 처우에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모든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조사기간 중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또는 징벌 조사 중 집필권을 제한하고 위 규정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나, 개정전까지는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을 이용, 수용자가 불복을 위해 접견, 서신수발을 요청하는 것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해석하여 폭넓게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교도소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담이나 서신 등을 통한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문제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집필권 제한 규정으로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제한 사유 중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의 것은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발송을 불허하는 경우

집필문서 발송의 불허 사유는 행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⁸⁾. 그러나 기본권 제한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7). 징벌규칙 제7조 :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의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8). 행형법 시행령 제67조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은 이를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집필후 외부에 발송할 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행정법 시행령에서 집필 문서 발송 불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한편, 집필문서 발송 불허 역시 수용질서 및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가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허위 사실 기재행위를 제한할 수 없고(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수용질서와 내부규율을 해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도소 측이 하고 있으므로 허위여부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교도관이나 교도소 등의 문제제기를 위하여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 아니라 할 수 없다.

한편, 석방 시에 집필문서를 가지고 가려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석방의 경우 수용질서나 교정, 교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석방시의 집필 문서 발송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집필 문서 발송 제한 절차도 문제이다. 행정법 시행령에서는 집필 문서의 발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그러나 교도소 등에서는 문서 발송을 불허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보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즉시 하지 않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불허문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서가 수용자의 것이고 불법 내용의 기재로 법원으로부터 몰수의 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이 이를 임의로 폐

수용중에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거나 석방시에 가지고 나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3제1항 각호 및 이 영 제6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③소장은 다 쓴 필기구와 집필용지의 회수·폐기 등 집필용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기타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의 1과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①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④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⑤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9). 행정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기하도록 한 것은 소유권침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¹⁰⁾.

3) 집필용구 및 집필 문서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는 집필시간, 장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필용구 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글을 쓴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고 교정, 교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필 그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집필 용구 소지 역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에서도 집필용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 의하면 일정수량의 필기구 및 집필용지의 개인 소지를 허용하면서, 검정색 볼펜 1자루, 1개월에 노트 한권 이하만 소지할 수 있고 다 쓴 노트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집필용구 소지 한계를 통해 집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¹¹⁾.

한편, 행형법 시행령에서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그런데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은 집필 내용 중 순수한 문학작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영치가 가능하고 기타 집필내용은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치를 원칙으로 한 위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또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3. 서신 관련 법규 및 실무의 문제점

서신교환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수용질서 및 규율, 수

10). 일본 감옥법에서는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47조 제2항), 2년의 기한을 두고 폐기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행형법은 '서신이 압류된 경우 이를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압류된 서신은 발신인에게 반송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나 사유로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형시설에 영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31조 제3항), 폐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1). 교도소 등에서는 수용자들이 볼펜 1자루 이상, 노트 1권 이상 소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들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 집필 용구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다.

12). 행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서신교환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행태는, 첫째, 서신검열의 문제, 둘째, 서신지연 교부 및 지연발송의 문제, 셋째, 서신발송 불허 및 폐기처분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서신검열의 문제

행형법은 그 외 수용자의 서신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검열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¹³⁾. 그러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이의 서신의 경우에는 검열을 할 수 없다¹⁴⁾.

형사사건 이외의 헌법, 행정, 민사사건에서 수용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변호사와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27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송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소송준비를 위해서는 검열없는 자유로운 서신검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와의 서신교환은 검열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등 내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중앙교정당국, 공무소 등에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 피구금자처우에관한 최저기준규칙(제36조)이나 유럽형사규칙(제42조)에서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대한 서신의 경우에는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보낼 서신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없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인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므로'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¹⁵⁾¹⁶⁾.

13).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

14).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검열없는 서신 교환을 위해서는,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서신을 통해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야 한다.

15).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하였었다.

2) 서신 지연교부 및 지연발송의 문제

교도소 등에서 서신발송, 교부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연된 경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¹⁷⁾.

3) 서신발송 불허 및 폐기처분의 문제

행형법에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 발송을 불허하도록 하면서¹⁸⁾,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서신교환권 제한 사유인 수용질서 및 수행자의 교정·교화와 무관하며 오히려 서신교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폐기처분은 집필문서의 폐기와 마찬가지로 폐기하도록 한 것 자체가 소유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과 발송불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즉시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자체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16). 이 보고서 '권리구제수단' 참조

17).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에게 송달된 서신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출소할 때 교부하거나, 수용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교부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18). 행형법 제18조의 2 제2항

19).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구사용

행형법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제14조).

계구사용은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장에서는 계구의 종류, 요건, 한계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 및 실무의 문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계구의 종류

1) 현행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 종류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 종류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이다.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계구규칙')에서 계구를 종류별로 구분하였는데, 포승은 호송용 포승과 개인용 포승,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 사슬은 긴 사슬과 짧은 사슬, 안면보호구는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와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로 구분하였다.

위 규칙에서 계구의 모양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승

| 종류 | 재질 | 울수 | 길이(m) | 직경(cm) | 중량(g) | 코길이(cm) |
|-----|----|------|-------|--------|-------|---------|
| 호송용 | 면사 | 750울 | 11 | 0.55 | 360 | 7 |
| 개인용 | 면사 | 140울 | 7 | 0.30 | 45 | 3 |

② 수갑

㉠ 금속수갑

| 재질 | 형태 | 중량(g) | 연결고리 | 시잡 시 규격 | 최소사용 손목크기 |
|-------------|-----------------------------|----------------------|-------------------------------|--------------------------------|--------------|
| 스테인레스 스틸 |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의 잠금장치 | 약 400g (열쇠포 합) | 2-3개 환규격: 지름2.5cm 미만 | 최대:20cm 이상 최소:16cm 이하 | 직경:5cm |

④ 가죽수갑

| 부분별 | 재질 | 규격 | 제원 |
|--------------|------------|--------------|-----------------------------|
| 혁대 및 손목걸이 | 소가죽 | 두께 0.8cm | 혁대 121cm 손목걸이 42cm |
| 자물쇠 | 특수가공 무쇠 | 두께 0.35cm | 가로 7cm 세로6cm |
| 손목걸이 조임쇠 | 특수가공 강철 | 두께 0.2cm | 가로 11.5cm 세로 42cm, 구멍 3개 |
| 열쇠 | 특수가공 강철 | 5.5cm | |

③ 사슬

| 재질 | 길이 | 연결고리 규격 | 형태 | 색상 |
|----|-------------------|----------------------------------|-----|--------|
| 스틸 | 긴사슬 4m 짧은사슬 2m | 굵기 0.5cm 가로 2.8cm 세로 1.8cm | 타원형 | 은색(도금) |

④ 안면보호구

㉞ 머리보호형

| 재질 | 형태 | 규격(11) | 비고 |
|---|----------|---|--|
| 결감 청남색 또는 감색천 중간제 솜 안감 백광목 | 두건 모양 | 몸체넓이 75cm 머리넓이 38cm 전체높이 65cm 머리높이 35cm 눈구멍지름 5cm 코구멍 밀변 7cm 높이 6cm의 삼각형 | -체형에 따라 사 용이 가능하도록 상중 하로 제작 - 결감과 안감사 이에 솜(2cm이상) 을 균일하게 퍼서 누빈다. |

㉠ 소란방지형

| 부분별 | 재질 | 규격 | 형태 |
|----------|------------------------|--|------------------------|
| 끈 | 소가죽 (은면피) 2mm 2겹 | 입 - 머리 위 37.5cm 입 - 머리 뒤 49cm 입 - 목뒤 21.5cm 머리위 - 목뒤 40.5cm | |
| 입마개 | 특수고무 (두께3-8.5mm) | 가로 14.75cm 세로 9.50cm | 입과 턱을 에워쌀 수 있는 둥근그릇 모양 |
| 걸쇠 고리 | 강철(도금) | | 수량 7개 |
| 고정쇠 | 스틸(일반철) | | 수량 7개 |

2) 현행법규의 문제점

계구의 사용은 아래 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계구 종류의 특성상 필요최소한의 원칙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계구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 종류가 적당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¹⁾(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한다)²⁾과 유럽형사시설규칙(제39조)에서는 사슬과 족쇄를 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독일 행형법(제95조)은 직접강제를 '사람의 신체적 힘, 그 보조수단으로 수갑, 직무상 허용된 검도·총포류·자극물질 등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형사시설법(제42조)에서도 계구로 포승, 수갑, 구속태, 방성구만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행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슬'은 국제인권규칙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슬이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행형법 시행령에서는 사슬의 사용요건에 관하여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제46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승과

- 1).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1955년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제1회 유엔회의에서 피구금자에 관한 획기적인 규정인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피구금자최저처우기준규칙)을 채택함.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를 행형제도수립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였으나 이 기준은 행형기관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라 최저기준점을 나타내고 있다.
- 2). 최저기준규칙 제33조.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사슬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갑'의 문제인데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의 의미는 '쇠수나 피의자의 양쪽 손목에 채우는, 쇠붙이를 가지고 한 쌍의 고리모양으로 만든 물건'이다. 그런데 계구규칙에서는 수갑의 종류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 손목을 다시 쇠고랑으로 묶는 계구'로써 수용자의 팔과 허리를 묶어 놓음으로 양 팔의 동작을 몸통에 고정시켜 완전 운동 불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위와같은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죽수갑에 관한 규정은 행형법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이며, 가죽수갑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계구 사용의 요건

행형법에서는 계구 사용의 요건으로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형법 시행령에서 각 계구별 사용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포승과 수갑은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사슬은 포승·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99. 12. 28. 개정 전에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계구 사용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소장의 재량에 두었다. 개정 행형법에서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요건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계구 사용의 요건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제33조)은 계구 사용요건으로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사

용 요건을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형사시설법(42조)은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도주의 우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도 궁극적으로 계구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것이며, 개정 전이라도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슬'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가 가장 큰 사슬의 사용을 소장의 재량하에 두었는 바, 위 규정의 삭제 역시 시급하며, 그 전이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계구사용의 절차

행형법 시행령은 계구를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45조). 계구 사용 자체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인 사후보고가 원칙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고, 계구사용이 교도관의 편의적 판단에 따라 일상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사후 보고 규정은 수용자의 인권보다는 계호의 편의성만 중시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금시설에서는 계구를 선 집행한 후 계구의 종류와 사유, 그 사용과 해제일시를 기록하는 계구사용감독부만을 담당교도관이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엄격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담당 교도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구규칙(제8조)에서 교정 시설 소속 의사로 하여금 계구 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안면보호구는, 사용 당하는 자의 정신건강에 크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고 다른 계구 역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 개시 직후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구 사용 전 수용자에게 계구 사용 이유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계구 사용 요건의 한계

1999. 12. 28. 개정전에는 계구사용의 포괄적인 요건만 규정되었을 뿐이었는데, 개정 행형법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계구사용이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 계구 사용의 남용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므로 계구 사용의 요건 및 한계(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를 명확히 하고, 행형법에 명시³⁾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기준규칙(제34조)은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독일 행형법은 '직접 강제가 교도소의 집행 및 보안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94조 1항)'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가장 적절한 여러 조치 중 그 개별성과 일반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의해 예견되는 침해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와의 관계에서 비례를 일탈해서는 안된다(제96조)'는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우리 행형법에는 계구에서의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판시⁴⁾함으로써 계구 사용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법원의 판례 및 국제인권규칙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계구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구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야 하지만, 계구사용의 시간 및 계구의 종류 역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구규칙에서 가축수감의 사용요건으로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⁵⁾, 보충성의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계구

3). 계구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계구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5). 계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사용의 장기화를 위한 조건을 스스로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애초 계구 사용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계구를 사용하거나⁶⁾, 계구 사용의 필요성이 사후 소멸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계구사용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⁷⁾. 이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계구 사용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수갑이 채워지고 사슬로 묶인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대소변 처리 등 일상적인 용무를 보아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한편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계구규칙에서는 각 계구를 어떤 경우에⁸⁾, 어떻게 사용할

- 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 17374호 판결에서는 소년인 미결수용자가 단지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재소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 교도관으로부터 화해할 것을 종용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어깨를 묶은 후 독거실에 격리수용하였고 그 다음날 위 미결수용자가 그 당시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이나 자해를 행하려고 시도한 바 없었고, 장차 격리수용할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던 경우, 설사 위 미결수용자가 다른 재소자와 제차 싸움을 벌일 염려가 있고 규율위반으로 장차 징벌에 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을 서로 격리수용하거나 독거 수감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소년수인 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위 미결수용자를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독거수감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위 미결수용자가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싸운 경위의 조사에 응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그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무려 27시간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5. 19. 선고 99가합35. 판결.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수행자인 원고가 처음 소란을 피운 1997. 4. 18.부터 같은 해 9. 9.까지 하루에 2, 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계구인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여 원고를 묶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이 원고가 담당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고 바늘을 삼킨 적도 있고 몇 차례 구호를 외치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어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하였다'는 교도소측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소란행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단 원고가 진정된 이후에는 원고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가사 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계구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 8).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5조(계구의 사용요건) ①포승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신사슴**은 고령자·여자·환자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로서 현장검증·사회견학 등을 위한 개별 호송시 그 수용자의 명예보호를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에게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슬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3.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양만신씨의 경우 병원 도착 전부터 안면보호구와 수갑, 포승을 착용한 채 전신마비를 당했으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사는 수술을 집행해야만 했다.

6. 징벌과 계구에 대하여

1999. 12. 28. 개정 행형법에서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저기준규칙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징벌조사기간 중 또는 징벌 집행 기간 중 계구사용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소란이나 싸움 등으로 징벌 조사를 받거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구 사용

위하여 특히 필요한때. 2. 양수승은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이외에서의 호송중에 사용하거나 교정 시설내에서의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3. 하퇴승은 당해 수용자의 범죄내용·형명·형기·범수·성격·수용생활태도 등으로 보아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특히 성격이 포악하여 타인에 대한 폭행 등 위해의 우려가 현저할 때 4. 하지승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려고 할 때 또는 교정사고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시 교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할 때.

② 수갑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급속수갑은 수용자의 호송시 또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2. 간속수갑은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사슬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포승·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가 임의로 이를 풀거나 손괴한때 또는 상습적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사고의 효과적 예방이나 진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에게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발 또는 손과 침상의 적당한 부위에 짧은 사슬을 연결하는 등 도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안면보호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1.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는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받아 자해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2.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타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때

9).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6조(계구의 사용방법)에서는 각 계구의 사용방법에 대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 요건이 사라지면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법원도 “징벌 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점까지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¹⁰⁾”라고 판시하였다.

1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구금시설 실태조사

...

서울지방교정청 . 59

대전지방교정청 . 101

대구지방교정청 . 128

광주지방교정청 . 173

서울지방교정청

| | |
|--------|----|
| 서울구치소 | 60 |
| 안양교도소 | 64 |
| 영등포구치소 | 68 |
| 성동구치소 | 71 |
| 수원구치소 | 74 |
| 인천구치소 | 77 |
| 영등포교도소 | 80 |
| 여주교도소 | 84 |
| 의정부교도소 | 87 |
| 춘천교도소 | 90 |
| 원주교도소 | 93 |
| 강릉교도소 | 96 |
| 평택구치소 | 99 |

서울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우 437-720) |
| 전화번호 | 031-423-6100~7(대표) |
| 팩스번호 | 031-423-6108 |
| 홈페이지 | http://www.seouldc.go.kr |

2. 연혁

- 1908. 10. 21. 경성감옥으로 개칭(서대문 현저동)
- 1923. 5. 5. 서대문형무소로 개칭
- 1967. 7. 7. 서울구치소로 개칭
- 1987. 11. 15. 현 위치로 신축 이전

3. 수용구분

- 미결 수용자
- 사형확정자 및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형판결 받은 피고인
-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
- 한미행정협정(SOFA) 관련사건 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3.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918명 | 879명 | |
| 직원 | 698명 | 676명 | 결원 22명 |
| 경비교도 | 220명 | 203명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2001. 8. 현재)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명 | 7명 | 1명 | 7명 | 5명 | 2명 | 5명 | 4명 | 1명 |

5. 수용자 현황(2002. 3.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3,200명 | 3,649명 | 2,634명 | 1,015명 | 1평당 2.3명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8명 | 8명 | 4명 | 4명 | 1명 | 1명 | 2명 | 2명 | 1명 | 1명 | 1 |
| 2001.9 | - | - | 4명 | 4명 | - | -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윤중식 | 의무서기관 | 가정의학 | 전임 |
| 정진철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 조영민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 김대균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 2001년 9월로 의무사무관 조수현 신규임용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 . | . | . | . |
| 1999년 | 163,101 | 33 | 155,582 | 5,433 | 2,053 |
| 2000년 7월 | 129,674 | 53 | 120,837 | 6,456 | 2,328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3건
- 2000년도 : 24건
- 2001년 7월 현재 : 11건

9.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직원피복, 인쇄물

10.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059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11,135건
- 접견실 현황 : 18개호실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6,057 | 79 | 1656 | 241 | 28 | 28 | 7 | 0 | 2746 | 108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555 | 444 | 114 | 185 | 145 | 111 |
| 1999년 | | 398 | 297 | 54 | 170 | 73 | 101 |
| 2000년 (8월현재) | | 253 | 247 | 92 | 144 | 11 | 6 |

13.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2 | 8 | 1 | | 24 | 5 | 1 | 25 | 10 | | 3 | 14 | 8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1건

안양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58번지 |
| 전화번호 | 031) 452-1412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aycorr.go.kr |

2. 연혁

- 1912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개칭
- 1923년 5월 5일 경성형무소로 개칭
- 1946년 4월 7일 마포형무소로 개칭
- 1961년 12월 23일 마포교도소로 개칭
- 1963년 9월 3일 현 위치로 이전. 안양교도소로 개칭함

3. 수용구분

- 지체부자유, 장애인, 농아 장애인 수용
- 3범이상 수형자
- 미결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68 | 458 | |
| 경비교도 | 155 | | |

3)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900 | 2,661 | 1,800 | 861 | 1.81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구분 연도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5 | 2 | 2 | 1 | 1 | 2 | 2 | | | |
| 2001.9 | | | 3 | 2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해웅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 최광섭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방진료 |
|----------|--------|----|--------|-------|------|
| 1998년 | 49,664 | 58 | 47,785 | 1,506 | 515 |
| 1999년 | 76,907 | 33 | 72,035 | 4,165 | 674 |
| 2000년 7월 | 40,468 | 27 | 38,083 | 1,910 | 448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2건
- 1999년도 : 19건
- 2000년도 : 16건
- 2001년 7월 현재 : 12건

9.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수용자 피복, 침구류, 가구

10.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305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587건
- 접견실 현황 : 3개호실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 1999년 6월부터 시행중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12,082 | 176 | 2459 | 400 | 23 | 189 | 52 | 21 | 6489 | 381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지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497 | 491 | 250 | 237 | 4 | 6 |
| 1999년 | | 410 | 388 | 185 | 203 | | 22 |
| 2000년 (8월현재) | | 501 | 469 | 218 | 251 | | 32 |

13.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 1 | 1 | | 2 | 1 | | | 3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5건
- 2000년 : 2건
- 2001년 7월현재 : 1건

영동포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우편번호152-707)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ydc.go.kr |

2. 수용구분

- 미결수용자

3.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31 | 430 | |
| 경비교도 | 15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7 | 5 | 2 | 5 | 4 | 1 |

4.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780 | 2,488 | 372 | 1,747 | 2.18 | |

5.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2 | 2 | 1 | 0 | 0 | 2 | 1 | 0 | 0 | |
| 2001.9 | | | 2 | 2 | | | 2 | 2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이학용 | 의무서기관 | 마취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30,398 | 0 | 125,698 | 3,570 | 1,130 |
| 1999년 | 157,825 | 0 | 148,192 | 8,095 | 1,538 |
| 2000년 7월 | 56,827 | 0 | 53,265 | 2,605 | 957 |

6.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6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7.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직원피복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710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5,123건
- 접견실 현황 : 6개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5,339 | 66 | 367 | 491 | 18 | 9 | 34 | 24 | 4266 | 9 | 11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259 | 244 | 101 | 134 | 9 | | 15 |
| 1999년 | 236 | 206 | 49 | 100 | 57 | 1 | 29 |
| 2000년 (8월현재) | 182 | 159 | 96 | 57 | 6 | | 23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 | | | | | | | | | 2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성동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우)138-709 |
| 전화번호 | 02)402-9131 |
| 팩스번호 | 02)408-9503 |
| 홈페이지 | http://www.sdc.go.kr |

2. 수용구분

- 미결수용자

3. 행정조직 관련

1) 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40 | 431 | |
| 경비교도 | 150 | | |

3)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2001년 8월 현재)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명 | 6명 | 1명 | 7명 | 5명 | 2명 | 5명 | 4명 | 1명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930 | 2,119 | 372 | 1,747 | 218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6 | 6 | 2 | 2 | 1 | 1 | 2 | 2 | 1 | 1 | - |
| 2001.9 | - | - | 2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형주 | 의무서기관 | 정형외과 | 전임 |
| 장병기 | 의무사무관 | 산부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131,758 | 4 | 121,473 | 10,281 | 0 |
| 1999년 | | 97,514 | 4 | 88,529 | 8,981 | 0 |
| 2000년 | 7월 | 87,865 | 2 | 79,104 | 8,759 | 0 |

8. 청원현황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9.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직원피복, 인쇄물

10.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765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4,973건
 - 접견실 현황 : 5개호실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8,607 | 104 | 2688 | 523 | 11 | 142 | 32 | 45 | 4153 | 104 | 549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73 | 71 | 23 | 47 | 1 | 2 |
| 1999년 | | 144 | 129 | 43 | 85 | 1 | 15 |
| 2000년 (8월현재) | | 129 | 124 | 51 | 68 | 5 | 5 |

20.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2 | 1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수원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번지 (우편번호 442-190) |
| 전화번호 | 031)217-7101~7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swguchiso.go.kr |

2. 연혁

- 1989년 12월 30일 신축공사 착공
- 1996년 6월 29일 개청(지상 9층과 지상 8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고층형 구치소)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구치소로 지하 1층, 지상 9층의 가동 수용동과 지상 8층의 나동 수용동 등 11개 부속건물로 구성. 감시대, 철조망 등 기존 교정시설의 전통적 보안시설이 없음

3. 수용구분

- 수원지방법원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 초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13 | 410 | |
| 경비교도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950 | 2,673 | 740 | 1,933 | 2.44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6 | 6 | 3 | 3 | | | 3 | 3 | | | |
| 2001.9 | | | 3 | 3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형태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 조숙형 | 의무서기관 | 가정의학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94,695 | 12 | 86,616 | 6,469 | 1,598 |
| 1999년 | 112,920 | 6 | 105,016 | 6,286 | 1,612 |
| 2000년 7월 | 66,816 | 0 | 62,222 | 3,618 | 976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2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740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4,956건
 - 접견실 현황 : 7개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7,135 | 0 | 399 | 0 | 5 | 0 | 0 | 0 | 6728 | 0 | 0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112 | 112 | 41 | 63 | 8 | | |
| 1999년 | 189 | 176 | 57 | 111 | 8 | | 13 |
| 2000년 8월 | 142 | 126 | 33 | 92 | 1 | | 16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인천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인천시 남구 학익2동 278번지 |
| 전화번호 | 032)868-8771~5 |
| 홈페이지 | 없음 |

2. 연혁

- 1997년 지상 2층, 지상 12층 신축

3. 수용구분

- 미결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06 | 398 | |
| 경비교도 | 15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050 | 2,624 | 694 | 1,930 | 2.40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구분 연도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5 | 2 | 2 | | | 3 | 3 | | | |
| 2001.9 | | | 2 | 2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서무창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 민형식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77,661 | 17 | 71,122 | 5,920 | 602 |
| 1999년 | | 87,799 | 17 | 78,133 | 9,159 | 490 |
| 2000년 | 7월 | 47,319 | 12 | 42,097 | 4,848 | 362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8건
- 2000년도 : 8건

○ 2001년 7월 현재 : 4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86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3,483건
 - 접견실 현황 : 10개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7,859 | 106 | 112 | 84 | 105 | 23 | 45 | 13 | 1509 | 5473 | 45 | 344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31 | 131 | 45 | 86 | | |
| 1999년 | | 110 | 110 | 25 | 85 | | |
| 2000년 (8월현재) | | 103 | 98 | 34 | 63 | 1 | 5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위 | 1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영등포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152-707) |
| 전화번호 | 02) 2619-2780~4 (대표전화) |
| 팩스번호 | 02) 686-9346 (보안과), 2619-2811(서무과) |
| 홈페이지 | http://ydpcorr.go.kr/ |

2. 연혁

- 1949. 12. 27. 부천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부천교도소로 개칭
- 1968. 9. 18. 영등포교도소로 개칭
- 1979. 9. 12. 종합정예직업훈련소 병설

3. 수용구분

- 직업훈련 희망수용자 선발, 정예직업훈련(제8공공직업훈련소)
- 초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직원 | 365 | 358 | |
| 경비교도 | 140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2001년 8월 현재)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명 | 7명 | 1명 | 7명 | 4명 | 3명 | 5명 | 4명 | 1명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400명 | 2,004 | 1,322 | 682 | 2.71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구분 연도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4 | 2 | 2 | | | 2 | 2 | | | |
| 2001.9 | | | 2 | 1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이희봉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 김상중 | 의무서기관 | 내과 | 전임 |

* 2001년 9월 현재 최진우 의무과장 발령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43,521 | 0 | 36,281 | 6,824 | 416 |
| 1999년 | | 50,790 | 0 | 45,154 | 5,192 | 444 |
| 2000년 7월 | | 25,006 | 0 | 21,938 | 2,824 | 244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3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6건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인쇄, 목공, 철공, 봉제, 식품 등 5개소 운영
- 위탁작업 : 컴퓨터 키보드 조립 및 쇼핑백 제작
- 외부통근 : 뇌성(구로공단 소재) 및 구외공장 운영
- **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운영 : 목공, 건축도장, 광고디자인, CNC선반, 제과제빵, 용접, 자동차정비, 창호, 컴퓨터교육, 타일, 한식조리 등 전문기능인 양성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91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 88건
- 1999년도 : 116건
- 2000년 8월현재 : 122건

3)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1,389건
- 접견실 현황 : 2개호실

4) 특수 면회시설

- 화상접견 시설 : 있음(영등포, 부산, 청송, 청주, 여주, 김천소, 광주교도소)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8,152 | 110 | 982 | 590 | 0 | 349 | 21 | 0 | 5986 | 70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차 | | | 청원작업 정지 | 도서열람 제한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 1998년 | | 139 | 103 | 27 | 66 | 10 | | 36 |
| 1999년 | | 303 | 225 | 77 | 119 | 29 | 1 | 77 |
| 2000년 (8월현재) | | 198 | 155 | 65 | 90 | 0 | | 43 |

20.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1 | | | | 2 | | | 2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여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212번지 우) 469 - 885 |
| 전화번호 | 031) 884-7800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yeojugyo.go.kr |

2. 연혁

- 1949. 10. 19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으로 운영
- 1954. 10. 7 수원교도소로 개칭
- 1998. 6. 22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기능 전환
- 2001. 7. 15 여주 신축시설로 이전
- 2001. 9. 29 교도소 명칭을 수원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변경(대통령령제17370호)

3. 수용구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과실범 수형자(교통사범 수용처우)
- 형기 10년 이하 초범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직원 | 232 | 230 | |
| 경비교도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070 | 719 | 719 | 0 | 0.64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3 | 3 | 1 | 1 | - | - | 2 | 2 | - | - | -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입여부 |
|-----|-------|------|------|
| 박종일 | 의무서기관 | 내과 | 전입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인쇄, 봉제 및 식품작업장
- 위탁작업 : 현재 쇼핑백조립, 조곡용 포대제작
- ** 직업훈련 : 정보기기운용, 자동차정비(6개월과정), 이용, 양복(1년과정)

9.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53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11건
 - 접견실 현황 : 1개호실
- 3) 특수 면회시설
 - 화상면회 시설 : 실시중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3,562 | 30 | 994 | 219 | 5 | 38 | 10 | 41 | 2154 | 39 | 0 |

11. 징벌현황

| 연도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59 | 55 | 34 | 21 | | | 4 |
| 1999년 | 28 | 28 | 13 | 15 | | | |
| 2000년 8월 | 43 | 42 | 21 | 21 | | | 1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구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의정부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3 우) 480 - 060 |
| 전화번호 | (031) 842 - 7601~3 |
| 팩스번호 | (031) 842 - 7080 |
| 홈페이지 | http://www.ujbcorr.go.kr |

2. 수용구분

- 초범수형자

3.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직원 | 288 | 284 | |
| 경비교도 | 12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4.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700 | 1,577 | 1,032 | 545 | 1.86 | |

5.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 | | 1 | | | | 1 | | |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임영균 | 의무서기관 | 산부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78,442 | 4 | 62,837 | 15,351 | 250 |
| 1999년 | 74,788 | 0 | 54,451 | 20,037 | 300 |
| 2000년 7월 | 47,036 | 0 | 30,481 | 16,455 | 100 |

6.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4건
- 2000년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7.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수용자피복, 인쇄물, 돈육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251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접견실 현황 : 3개호실
 - 변호인 접견건수 : 1,515건
-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 시행중에 있음(확인요!!)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2,974 | 55 | 1396 | 0 | 0 | 0 | 0 | 0 | 1440 | 35 | 0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147 | 140 | 60 | 79 | 1 | | 4 |
| 1999년 | 174 | 153 | 90 | 57 | 6 | | 21 |
| 2000년 (8월현재) | 86 | 76 | 28 | 45 | 3 | | 10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 구분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 | | | | | 1 | | | | | 1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현재 : 없음

춘천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2. 수용구분

- 2범교도소(2범수형자 수용시설)

3.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336 | 326 | |
| 직원 | 236 | 226 | |
| 경비교도 | 100 | 100 | |

3)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100 | 1361 | 976 | 385 | 2.2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주우현 | 의무서기관 | 정형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병진료 |
|----------|-------|----|-------|------|------|
| 1998년 | 32507 | 2 | 30840 | 1344 | 321 |
| 1999년 | 44947 | 5 | 43979 | 690 | 273 |
| 2000년 7월 | 36516 | 4 | 35748 | 544 | 220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15건
- 2000년도 : 6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19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559건
- 접견실 현황 : 2개호실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0171 | 217 | 1503 | 103 | 0 | 260 | 224 | 0 | 7745 | 94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 작업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 223 | 217 | 126 | 87 | 4 | | 6 |
| 1999년 | | 270 | 261 | 133 | 128 | | | 9 |
| 2000년 (8월현재) | | 164 | 160 | 89 | 71 | | | 4 |

13.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1 | 1 | | 1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4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현재 : 1건

원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4 |
| 전화번호 | 033-741-4800 |
| 팩스번호 | 033-741-4813 |
| 홈페이지 | www.corr.go.kr |

2. 연혁

- 1979 개청
- 1999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전산응용((CAD)기능사과정을 추가해 현재 8개 직종의 기술훈련 실시중.

3. 수용구분

- 초범교도소(초범수형시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의 재판대기자와 서울 등 전국에서 형이 확정된 초범자를 이송받아 수용함.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322 | 321 | |
| 직원 | 222 | 221 | |
| 경비교도 | 100 | 100 | |

3)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990 | 1104 | 989 | 115 | 1.98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홍규식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방진료 |
|-------|----|------|----|------|-----|------|
| 1998년 | | 7336 | 1 | 6538 | 725 | 72 |
| 1999년 | | 5630 | 0 | 5149 | 426 | 55 |
| 2000년 | 7월 | 2934 | 0 | 2725 | 180 | 29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3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2 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174 건
 - 접견실 현황 : 2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2031 | 72 | 193 | 24 | 15 | 0 | 30 | 0 | 1214 | 7 | 0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88 | 283 | 197 | 85 | 1 | 5 |
| 1999년 | | 266 | 220 | 150 | 70 | | 46 |
| 2000년 (8월현재) | | 98 | 85 | 57 | 28 | | 13 |

11. 사고

1)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4건
- 2000년 :0건
- 2001년 7월현재 :1건

12. 기타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사건, 사고

98년 4월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폭로해 관련 교도관이 파면당함. 교도관은 히로뽕과 담배 반입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음. 동료 교도관 한 사람은 그가 문제의 재소자를 뽕뽕 묶어 독방에 가뒀고, 항의하는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다고 폭로함.

강릉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20 |
| 전화번호 | 033-649-8202, 8100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www.gncorr.go.kr |

2. 연혁

- 강릉교도소 기공(1966.11.22)
- 강릉교도소 준공(1970.12.31)
- 강릉교도소 개청(1971.10.26)

3. 수용구분

- 2범 교도소(2범수형자 수용시설)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244 | 242 | |
| 직원 | 164 | 162 | |
| 경비교도 | 80 | 80 | |

3)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7 | 4 | 3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400 | 501 | 248 | 253 | 2.58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노현부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방진료 |
|----------|-------|----|-------|------|------|
| 1998년 | 15672 | 3 | 14757 | 860 | 52 |
| 1999년 | 22115 | 8 | 20814 | 1134 | 159 |
| 2000년 7월 | 9853 | 5 | 9234 | 529 | 85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1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68 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386건
- 접견실 현황 : 2개호실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4585 | 132 | 864 | 171 | 126 | 49 | 121 | 79 | 2984 | 43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68 | 51 | 24 | 19 | 8 | 11 |
| 1999년 | | 41 | 28 | 16 | 8 | 4 | 13 |
| 2000년 (8월현재) | | 38 | 34 | 15 | 13 | 6 | 4 |

20. 사고 -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 구분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평택구치지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
| 전화번호 | (031) 650-5800~3 |

2. 수용구분

- 미결수용자 수용시설

3.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112 | 112 | |
| 직원 | 62 | 62 | |
| 경비교도 | 50 | 50 | |

4.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50 | 285 | 63 | 222 | 2.06 | |

5. 의료 현황

1)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최동한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2)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3)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2738 | 0 | 12433 | 300 | 5 |
| 1999년 | 12963 | 6 | 11324 | 1629 | 4 |
| 2000년 7월 | 12663 | 1 | 11832 | 814 | 16 |

6.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0건

7.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6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573건
 - 접견실 현황 : 2개호실

8.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2369 | 0 | 210 | 0 | 0 | 0 | 0 | 528 | 1628 | 0 | 0 |

9.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21 | 21 | 10 | 10 | 1 | | |
| 1999년 | 7 | 7 | 5 | 2 | | | |
| 2000년 (8월 현재) | 10 | 10 | 6 | 4 | | | |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102

천안소년교도소 106

청주교도소 109

천안개방교도소 113

공주교도소 116

청주여자교도소 119

홍성교도소 122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 125

대전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 |
| 전화번호 | 042)544-9301~3 |
| 팩스번호 | 042)544-9304 |
| 홈페이지 | www.tjc.go.kr |

2. 연혁

- 1919. 5. 1. 대전감옥으로 개칭(총독부령 86호)
- 1923. 5. 5. 대전형무소로 개칭(조선총독부령 72호)
- 1961. 12. 23. 대전교도소로 개칭(법률제858호)
- 1984. 3. 20. 현 소재지인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로 이전

3. 수용구분

- 대전지방법원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 제1심 한미행정협정사건피의자 및 피고인
- 대전,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및 한미행정협정사건 피고인
- 대전고등법원 및 관할지방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및 사형 확정자
- 외국인 남자 수형자
- 2범 이상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732 | |
| 직원 | | 591 | 582 | |
| 경비교도 | | | 150 | 2001.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940 | 4,038 | 2,686 | 1,352 | 2.22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8 | 8 | 3 | 3 | - | - | 4 | 4 | 1 | 1 | 1 |
| 2001.9 | - | - | 3 | 3 | - | -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전종석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 우현제 | 의무서기관 | 마취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78,070 | 15 | 75,187 | 1,079 | 1,789 |
| 1999년 | 90,991 | 20 | 87,972 | 1,170 | 1,829 |
| 2000년 7월 | 49,082 | 8 | 47,352 | 839 | 883 |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1 건
- 1998년도 : 4 건
- 1999년도 : 23 건
- 2000년도 : 20 건
- 2001년 7월 현재 : 11 건

8. 작업 훈련 상황

1) 직업훈련 내역

| 과정 | 직종 | 계획인원 | 실시인원 | 훈련기간 |
|------|--------|------|------|------|
| 공고양성 | 타일 | 20 | 20 | 1년 |
| | 자동차정비 | 20 | 21 | 1년 |
| | 건축목공 | 20 | 14 | 1년 |
| | 전자출판 | 20 | 19 | 1년 |
| | 양복 | 10 | 10 | 1년 |
| | 이용 | 25 | 23 | 1년 |
| 일반향상 | 건축목공 | 10 | 13 | 1년 |
| | 양복 | 5 | 10 | 1년 |
| | 자동차정비 | 10 | 12 | 1년 |
| | 건축일반시공 | 15 | 13 | 1년 |
| | 피부관리 | 20 | 10 | 4개월 |
| 계 | 8개 직종 | 175 | 165 | |

2) 기능자격 취득인원

| 년도 | 계 | 2000년 | 1999년 | 1998년 | 1997년 |
|----|-----|-------|-------|-------|-------|
| 인원 | 722 | 114 | 143 | 118 | 162 |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445 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 481건
- 1999년도 : 740건
- 2000년 8월 현재 : 404건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설치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13,433 | 492 | 3,582 | 1,092 | 89 | 388 | 196 | 290 | 6,401 | 729 | 0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511 | 428 | 180 | 239 | 9 | 83 |
| 1999년 | | 488 | 327 | 134 | 173 | 20 | 161 |
| 2000년 (8월 현재) | | 395 | 277 | 129 | 136 | 12 | 118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1998년 | | | 1999년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1 | 1 | - | 3 | - | - | 1 | - | - | - | 3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5건
- 2000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0 건

천안소년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 27 |
| 전화번호 | 041) 567-3461 ~3 |
| 팩스번호 | 041) 567-3464 |
| 홈페이지 | http://www.boycorr.go.kr |

2. 연혁

- 1938. 3. 31 인천소년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인천소년교도소로 개칭
- 1990. 11. 8 천안소년교도소로 개칭
- 1990. 12. 23 현 장소로 이전

3. 수용구분

- 20세 미만 남자 초범 수용자
-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미군 및 군속 남자 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 직원 | | 222 | 220 | |
| 경비교도 | | | 130(천안구치지소 포함)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350 | 796 | 796 | 0 | 1.18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3 | 3 | 1 | 1 | - | - | 2 | 2 | - | - | -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송인기 | 의무서기관 | 흉부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없음
- 1998년도 : 없음
- 1999년도 : 없음
- 2000년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양재와 인쇄공장에서 피복제작과 각종 사무용 서류 양식 생산
식품공장에서는 생선목을 생산

- 위탁작업 : 바구니 제작, 의료기기 조립 등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제작, 생산
- 외부통근 : 3개의 기업체에 약 80여명이 외부통근

9. 직업훈련

- 애니메이션, 제과 제빵, 정보기기운용, 자동차정비, 이용기술, 건축배관, 전기 용접, CNC선반 등의 직종을 개설

10. 면회시설 및 현황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43 건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2,394 | 665 | 1421 | 116 | 41 | 216 | 129 | 98 | 7232 | 213 | 842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차 | | | 청원작업 정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46 | 46 | 20 | 24 | 2 | |
| 1999년 | | 85 | 85 | 45 | 39 | 1 | |
| 2000년 (8월현재) | | 41 | 41 | 25 | 15 | 1 | |

13.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1998년 | | | 1999년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1 | - | - | - | - | 1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청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
| 전화번호 | 043) 296-8171~4 |
| 팩스번호 | 043) 296-7950 |
| 홈페이지 | http://www.cjc.go.kr/ |

2. 연혁

- 1908. 11. 20. 공주감옥 청주분감으로 설치
- 1946. 4. 1. 청주형무소로 승격
- 1961. 12. 23. 청주교도소로 개칭
- 1978. 11. 21. 신축
- 1978. 9. 12. 정예직업훈련소 병설

3. 수용구분

- 청주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396 | |
| 직원 | 267 | 266 | |
| 경비교도 | | 130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150 | 1,495 | 887 | 608 | 2.4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 | 1 | 1 | - | - | 1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최강 | 의무서기관 | 마취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30,417 | 0 | 24,566 | 5,701 | 150 |
| 1999년 | 29,675 | 0 | 23,906 | 5,644 | 125 |
| 2000년 7월 | 18,854 | 0 | 17,401 | 1,373 | 80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 건 ○ 1998년도 : 2 건

○ 1998년도 : 261

○ 1999년도 : 352

○ 2000년 8월 현재 : 257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 설치(2001. 11. 23. 완공)

○ 화상접견시범실시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5,345 | 216 | 1,381 | 71 | 4 | 12 | 13 | 6 | 3,192 | 31 | 406 |

11.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47 | 238 | 66 | 171 | 1 | 8 |
| 1999년 | | 206 | 194 | 102 | 91 | - | 12 |
| 2000. 8. 현재 | | 134 | 112 | 43 | 68 | - | 22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1 | - | - | - | 1 | - | - | - | 1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8건

○ 2001년 7월 현재 : 0건

천안개방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남 천안시 신당동 112 |
| 전화번호 | 041-561-4301~2 0502-661-0101 |
| 팩스번호 | 561-4303 |
| 홈페이지 | http://www.opencorr.go.kr |

2. 연혁

- 1988. 11. 30 천안개방교도소 개청
- 1994. 5. 24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소로 기능 전환
- 2000. 2. 28 개방형 직위 소장으로 직제 변경 (4급에서 -> 3급 기관으로)
- 2002. 1. 1 과실범전담교도소로 기능 전환

3. 수용구분

- 3범 이하의 과실범 및 교통사범 수형자 중 형기5년 이하, 잔형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인 자 (단, 과실범 또는 교통사범 이외의 전과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가석방이 가능한 초범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99 | |
| 직원 | 101 | 99 | |
| 경비교도 | | 0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7 | 4 | 3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430 | 395 | 395 | 0 | 1.03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 | 1 | 1 | - | - | -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노재한 | 의무서기관 | 신경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 건
- 1998년도 : 0 건
- 1999년도 : 0 건
- 2000년도 : 0 건
- 2001년 7월 현재 : 0 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24 건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6,415 | 265 | 883 | 510 | 20 | 74 | 61 | 243 | 4,034 | 248 | 6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 6 | 6 | | 5 | 1 | | |
| 1999년 | | 9 | 9 | 3 | 4 | 2 | | |
| 2000년 (8월 현재) | | 4 | 4 | 1 | 3 | | |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2건

공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360 |
| 전화번호 | 041)851-3200, 3210, 3211 |
| 팩스번호 | 041)851-5813 |
| 홈페이지 | http://www.gjc.go.kr |

2. 연혁

- 1908. 4. 11. 공주감옥으로 출발
- 1923. 5. 5. 공주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공주형무소를 공주교도소로 개칭

3. 수용구분

- 2범 이상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311 | |
| 직원 | | 218 | 216 | |
| 경비교도 | | | 95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800 | 907 | 858 | 49 | 2.05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1 | 1 |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3)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2,819 | 0 | 2,510 | 259 | 50 |
| 1999년 | | 2,840 | 0 | 2,495 | 304 | 41 |
| 2000년 | 7월 | 1,948 | 2 | 1,750 | 175 | 21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 건
- 1998년도 : 0 건
- 1999년도 : 6 건
- 2000년도 : 5 건
- 2001년 7월 현재 : 2 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52 건

2) 특수 면회시설 없음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8,050 | 243 | 666 | 618 | 24 | 223 | 91 | 52 | 5,931 | 140 | 0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지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66 | 152 | 124 | 27 | 1 | 14 |
| 1999년 | | 140 | 118 | 77 | 38 | 3 | 22 |
| 2000년 (8월 현재) | | 136 | 119 | 66 | 53 | - | 17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3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청주여자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
| 전화번호 | 043)296-8177~8 |
| 팩스번호 | 043)265-1134 |
| 홈페이지 | http://www.cwcorr.go.kr |

2. 연혁

- 1989. 10. 16. 청주여자교도소 신설
- 2002. 10월말 청주여자교도소 신축 이전 예정 중

3. 수용구분

- 전국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여자수형자
- 여자 가석방 예정자
- 외국인 여자 수형자(전담소)
- 여자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 여지지체 부자유 수형자
- 여자노역장 유치 수용자 및 일시수용자 수용
- 초범 이상 여자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130 | |
| 직원 | 135 | 130 | |
| 경비교도 | | 0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340 | 457 | 457 | 0 | 1.71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 | 1 | 1 | - | - | -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전진표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8년도 : 없음 ○ 1999년도 : 없음
○ 2000년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봉제공장2개 운영, 생산품목 : 미결·기결 수형자복, 직원복
○ 위탁작업 : 현재 티셔츠제작 등 2개 공장 운영

9. 작업훈련

| 훈련과정 | | 직종 | 실사인원 | 훈련기간 | 비고 |
|----------------|------------------|------|------|--------|-----|
| 계 | | 5 | 116 | | |
| 공공 직업 훈련 | 양 성 훈 련 | 미용 | 41 | 6개월 과정 | 기능사 |
| | | 한식조리 | 46 | 6개월 과정 | 기능사 |
| | | 양장 | 10 | 1년 과정 | 기능사 |
| | | 한복 | 10 | 1년 과정 | 기능사 |
| | | 기계자수 | 10 | 1년 과정 | 기능사 |

10.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3 건
- 2) 특수 면회시설 : 없음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891 | 53 | 28 | 360 | 36 | 5 | 4 | 9 | 1,297 | 31 | 0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1 | 18 | 11 | 2 | 5 | 3 |
| 1999년 | | 9 | 6 | 1 | 2 | 3 | 3 |
| 2000년 (8월현재) | | 6 | 5 | 2 | 3 | | 1 |

13.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홍성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
| 전화번호 | 041-631-1412 |
| 팩스번호 | 041-632-2141 |
| 홈페이지 | http://www.hscorr.go.kr |

2. 연혁

- 1973. 9. 7. 개청

3. 수용구분

- 2범 이상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253 | |
| 직원 | 172 | 168 | |
| 경비교도 | | 85 | 2001. 8. 31. 현재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570 | 699 | 392 | 307 | 2.3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윤성로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16,127 | 0 | 14,337 | 1,728 | 62 |
| 1999년 | | 17,809 | 0 | 15,790 | 1,928 | 91 |
| 2000년 | 7월 | 10,053 | 0 | 9,035 | 975 | 43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 건 ○ 1998년도 : 0 건
○ 1999년도 : 2 건 ○ 2000년도 : 4 건 ○ 2001년 7월 현재 : 1 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20 건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3,755 | 94 | 979 | 251 | 13 | 20 | 0 | 6 | 2003 | 32 | 0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 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41 | 41 | 22 | 18 | 1 | |
| 1999년 | | 75 | 64 | 39 | 22 | 3 | 11 |
| 2000. 8. 현재 | | 29 | 29 | 17 | 10 | 2 |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0건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충남 논산시성동면 우곡리 344 |
| 전화번호 | 041) 733-2200 |
| 팩스번호 | 041)733-2227 |
| 홈페이지 | http://www.nscorr.go.kr |

2. 연혁

- 1997. 8. 13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 개칭
- 1998. 2. 28.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 개칭

3. 수용구분

- 초범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148 | |
| 직원 | 78 | 78 | |
| 경비교도 | | 70 | 2001. 8. 31. 현재 |

5. 수용자 현황(2001. 8. 31.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350 | 273 | 216 | 57 | 1.33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 | - | - | 1 | - | - | - | - | - | - | - |
| 2001.9 | - | - | - | -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정인수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방진료 |
|----------|-------|----|-------|-----|------|
| 1998년 | 3,448 | 0 | 3,366 | 67 | 15 |
| 1999년 | 9,948 | 0 | 9,384 | 525 | 39 |
| 2000년 7월 | 5,649 | 0 | 5,369 | 231 | 49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 건
- 1998년도 : 0 건
- 1999년도 : 2 건
- 2000년도 : 1 건
- 2001년 7월 현재 : 0 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65 건

2) 특수 면회시설 없음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435 | 23 | 140 | 17 | 12 | 0 | 0 | 0 | 188 | 55 | 0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0 | 9 | 1 | 8 | | 1 |
| 1999년 | | 22 | 21 | 12 | 9 | | 1 |
| 2000년 (8월현재) | | 19 | 16 | 5 | 10 | 1 | 3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대구지방교정청

- 129 대구구치소
- 132 부산교도소
- 136 청송교도소
- 139 청송제2교도소
- 142 대구교도소
- 146 마산교도소
- 149 부산구치소
- 152 청송제1보호감호소
- 155 청송제2보호감호소
- 158 김천소년교도소
- 161 진주교도소
- 164 안동교도소
- 167 울산구치소
- 170 경주교도소

대구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8-1 (706-020) |
| 전화번호 | 053-740-5200 |
| 팩스번호 | 053-745-0581 |
| 홈페이지 | |

2. 연혁

- 1999. 3. 개청

3. 수용구분

- 대구지방법원 관할 일심 피의자,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항소 3부 피고인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정원 | 현원 | 비고 |
|------|-----|-----|----|
| 인원 | | | |
| 계 | 382 | - | |
| 직원 | 262 | 262 | |
| 경비교도 | 120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350 | 1750 | 322 | 1428 | 2.39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3 | 1 | 1 | - | - | 3 | 2 | - | - | - |
| 2001.7 | 4 | 4 | 1 | 1 | - | - | 3 | 3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최준영 | 의무서기관 | 산부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0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414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407건
- 접견실 현황 : 5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5734 | 258 | 378 | 925 | 52 | 213 | 7 | 393 | 2830 | 0 | 65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구분 \ 연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정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9년 | 154 | 139 | 23 | 111 | 5 | - | 15 |
| 2000. 8월 현재 | 140 | 132 | 35 | 96 | 1 | - | 8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별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5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1.23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008 | 2008 | 1802 | 206 | 2.24 | 초범 1,667 재범 341 |

6. 시설

1) 시설구분

| 구분 | 수 | 동수 | 면적 |
|-----|---|----|--------|
| 계 | | 58 | 22,536 |
| 사동 | | 11 | 7,267 |
| 공장 | | 6 | 4,944 |
| 교육장 | | 1 | 1,380 |
| 기타 | | 40 | 8,945 |

2) 거실구분

| 종류 수량 | 혼거실 | | | | | 독거실 | | | | |
|-----------|-----|----|----|----|----|-----|----|----|----|----|
| | 계 | 여사 | 병사 | 미결 | 기결 | 계 | 여사 | 병사 | 징별 | 일반 |
| 합계 300 | 225 | | | | | 75 | | | | |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 | 1 | 1 | - | - | - |
| 2001.7 | 2 | 2 | 1 | 1 | - | - | 1 | 1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유명주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6325 | 6 | 15933 | 309 | 77 |
| 1999년 | 59645 | 9 | 57105 | 2389 | 142 |
| 2000년 7월 | 19858 | 3 | 18732 | 1014 | 109 |

8.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1건
- 1998년도 : 12건
- 1999년도 : 5건
- 2000년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8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38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 98건
- 1999년도 : 236건
- 2000년 8월 현재 : 217건

3)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525건
- 접견실 현황 : 5개 호실

4) 특수 면회시설 : 원격화상접견 시범설치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3685 | 104 | 737 | 35 | 32 | 35 | 44 | 0 | 2386 | 10 | 0 |

11.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40 | 238 | 117 | 121 | - | 2 |
| 1999년 | | 509 | 505 | 265 | 240 | - | 4 |
| 2000년(8월현재) | | 253 | 246 | 149 | 85 | 12 | 7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 구분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14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청송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763-710) |
| 전화번호 | 054-874-4500 |
| 팩스번호 | 054-872-9505 |
| 홈페이지 | |

2. 연혁

- 1981. 10. 2 청송제1보호감호소 설치(대통령령 제10476호)
- 1981. 12. 2 청송제1보호감호소 개칭
- 1983. 3. 9 청송교도소로 개칭(대통령령 제11066호)

3. 수용구분

- 보호감호 병과수형자
- 2범 이상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3. 27. 현재)

| 구분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669 | 628 | |
| 직원 | 339 | 330 | |
| 경비교도 | 330 | 298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3.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보호병과자 | 일반수형자 | | |
| 1850 | 1767 | 735 | 1,032 | 1.5 | |

6. 시설

1) 시설구분

| 구분 | 수 | 동수 | 면적 |
|-----|---|-----------------|----------|
| 계 | | | 694,505평 |
| 사동 | | 179동 | 44,400평 |
| 공장 | | | |
| 교육장 | | | |
| 기타 | | 비상대기숙소16동 590세대 | |

2) 거실 난방 여부 : 난방공사 중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4 | 2 | 2 | - | - | 1 | 1 | 1 | 1 | 1 |
| 2001.7 | 3 | 3 | 2 | 2 | - | - | 1 | 1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한주섭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 전종환 | 의무서기관 | 치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8.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9건
- 1999년도 : 9건 ○ 2000년도 : 23건
- 2001년 7월 현재: 9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2002년) : 18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2090 | 460 | 2839 | 196 | 52 | 368 | 79 | 125 | 7416 | 382 | 16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88 | 267 | 105 | 162 | - | 21 |
| 1999년 | | 415 | 317 | 184 | 133 | - | 98 |
| 2000년(8월현재) | | 383 | 319 | 204 | 113 | 2 | 64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 | - | - | 1 | - | - | - | - | - | - | 1 | 1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청송제2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55-1(763-710) |
| 전화번호 | 054-872-4700~2 |
| 팩스번호 | 054-872-4704 |
| 홈페이지 | my.netian.com/~cs201 |

2. 연혁

- 1992년 8월 31일 청송제2교도소 설치(대통령령 제13720호)
- 1992년 12월 30일 수용개시
- 1993년 7월 15일 청송제2교도소 개칭

3. 수용구분

- 2범 이상 수형자
- 특정 강력범
- 각 소에서 특별정신교육을 받은 자 중 성적 불량자
- 상습규율 위반자(교정질서저해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5. 30.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355 | 342 | |
| 직 원 | 255 | 247 | |
| 경비교도 | 100 | 95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5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5.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000 | 619 | 619 | 0 | 0.85 | |

6. 시설

1) 시설구분

| 구분 | 수 | 동수 | 면적 |
|-----|---|----|--------|
| 계 | | 31 | 29,695 |
| 사동 | | 11 | 14,807 |
| 공장 | | 1 | 1,824 |
| 교육장 | | 2 | 4,063 |
| 기타 | | 17 | 9,001 |

2) 거실 난방 여부 : 난방공사 중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 | 1 | 1 | - | - | 1 |
| 2001.7 | 2 | 2 | 1 | 1 | - | - | 1 | 1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박경범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8. 연도별 청원현황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2건

○ 2000년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없음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9028 | 180 | 828 | 257 | 47 | 117 | 34 | 42 | 7293 | 35 | 159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 소계 | 2월 | 1월 | | | 20일 |
| 1998년 | | 91 | 88 | 50 | 37 | 1 | - | 3 |
| 1999년 | | 170 | 169 | 95 | 72 | 2 | - | 1 |
| 2000년 (8월 현재) | | 111 | 111 | 65 | 46 | - | - | -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2 | - | - | 1 | 1 | - | - | - | - | - | - | 1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6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대구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 (711-836) |
| 전화번호 | 053-632-4501~6 |
| 팩스번호 | 053-632-6909 |
| 홈페이지 | myhome.netsgo.com/tomaskim |

2. 연혁

- 1908. 7. 16 대구감옥 개칭, 법무령 제10호
- 1910. 4. 삼덕동으로 신축이전
- 1923. 5. 5 대구형무소로 개칭, 부영 제 72 호
- 1961. 12. 23 대구교도소로 개칭, 법률 제 858호
- 1971. 6. 1 현 위치로 신축 이전

3. 수용구분

- 대구지방법원 항소1,2부 및 대구고등법원 계류 항소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관할 상고피고인
- 2범 이상 수형자, 공안사범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616 | 606 | -10 |
| 직 원 | | 466 | 464 | -2 |
| 경비교도 | | 150 | 142 | -8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3.18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670 | 3231 | 2668 | 563 | 2.01 | |

* 노역자 : 1564명

비노역자 : 994명(환자 68명, 징벌 55명, 조사 18명, 기타 851명)

6. 시설

1) 시설구분

| 구분 | 수 | 동수 | 면적 |
|-----|---|-----|---------|
| 계 | | 79동 | 10,356평 |
| 사 동 | | | |
| 공 장 | | | |
| 교육장 | | 5개소 | 121평 |
| 기 타 | | | |

2) 거실 난방 여부 : 난방공사중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5 | 3 | 3 | - | - | 2 | 2 | - | - | - |
| 2001.7 | 5 | 5 | 3 | 3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입여부 |
|-----|-------|------|------|
| 김용구 | 의무서기관 | 정형외과 | 전입 |
| 이경률 | 의무사무관 | 일반외과 | 전입 |
| 백영국 | 의무사무관 | 일반외과 | 전입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150384 | 23 | 146980 | 3166 | 215 |
| 1999년 | | 79949 | 17 | 77180 | 2559 | 193 |
| 2000년 7월 | | 54781 | 12 | 52588 | 2091 | 90 |

8.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2건
 ○ 1999년도 : 6건 ○ 2000년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2002년) : 192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 711건 ○ 1999년도 : 475건 ○ 2000년 8월 현재 : 212건

3)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4126건 ○ 접견실 현황 : 7개 호실

4)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운영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2929 | 1001 | 2305 | 2323 | 111 | 551 | 120 | 93 | 4664 | 581 | 720 |

11.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 정 | 작업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 1998년 | | 640 | 622 | 393 | 227 | 2 | - | 18 | |
| 1999년 | | 603 | 575 | 358 | 211 | 6 | - | 28 | |
| 2000. 8. 현재 | | 410 | 404 | 199 | 204 | 1 | - | 6 |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 | - | - | 1 | 1 | - | 4 | - | - | - | 3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3
- 2000년 : 4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13. 수용자 이용시설

1) 컴퓨터 보유현황 : 218대

마산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345 (630-705) |
| 전화번호 | 055-298-9010~4 |
| 팩스번호 | 055-295-4198 |
| 홈페이지 | www.masancorr.go.kr |

2. 연혁

- 1910. 7. 1 부산감옥 마산분감 설치, 총감부령 제 24 호
- 1913. 2. 1 마산시 오동동 107번지로 이전
- 1923. 5. 5 부산형무소 마산지소로 개칭, 각령 제 2 호
- 1946. 3. 28 마산형무소로 승격, 법무부령 제 32 호
- 1961.12.23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 법률 제 858 호
- 1970. 2. 16 마산 오동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

3. 수용구분

- 초범 수형자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밀양지원에서 형 확정된 수형자
- 한·미행정협정 사건 미결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445 | | |
| 직원 | | 325 | 316 | |
| 경비교도 | | 12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장별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780 | 2135 | 1321 | 814 | 2.32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3 | 2 | 1 | - | - | 2 | 2 | - | - | 1 |
| 2001.7 | 4 | 4 | 2 | 2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정성윤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40866 | 7 | 40450 | 378 | 31 |
| 1999년 | | 59066 | 7 | 58407 | 624 | 28 |
| 2000년 7월 | | 32078 | 8 | 31784 | 254 | 32 |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2건

○ 2000년도 : 7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372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1,385건
 - 접견실 현황 : 6개 호실
-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운영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6553 | 428 | 475 | 256 | 27 | 174 | 0 | 9 | 4806 | 134 | 0 |

10.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73 | 268 | 113 | 155 | - | 5 |
| 1999년 | | 200 | 198 | 80 | 118 | - | 2 |
| 2000년 (8월현재) | | 189 | 188 | 83 | 103 | 2 | 1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1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부산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666 (617-737) |
| 전화번호 | 051-324-5501~6 |
| 팩스번호 | 051-324-5509 |
| 홈페이지 | www.busandc.go.kr |

2. 연혁

- 1898. 1. 12. 감옥 사무 개시
- 1909. 10. 21. 부산감옥으로 개칭
- 1923. 5. 5. 부산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부산교도소로 개칭
- 1973. 12. 23. 현 위치로 이전
- 1986. 5. 31. 부산구치소로 개편
- 2001. 1. 5. 교정부이사관 이종환 제44대 소장으로 부임

3. 수용구분

- 미결수용자 및 한미행정협정사건 미결수용자
- 초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654 | | |
| 직원 | | 504 | 498 | |
| 경비교도 | | 15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300 | 2367 | 720 | 1917 | 2.04 | |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4 | 4 | 2 | 2 | - | - | 2 | 2 | - | - | - |
| 2001.7 | 4 | 4 | 2 | 2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종대 | 의무서기관 | 가정의학 | 전임 |
| 김도균 | 의무서기관 | 마취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223393 | 0 | 220607 | 1412 | 1374 |
| 1999년 | 244045 | 0 | 241997 | 1274 | 774 |
| 2000년 7월 | 139961 | 0 | 138432 | 908 | 621 |

8.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10건 ○ 2000년도 : 15건
 ○ 2001년 7월 현재 : 4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46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4,742건
- 접견실 현황 : 7개 호실

3) 특수 면회시설

- 화상면회 시설
- 부부만남의 집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6958 | 509 | 1320 | 380 | 70 | 429 | 77 | 23 | 4002 | 80 | 0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 정 | 경고 | |
|-----------|----|-----|-----|-----|-----|---------------|----|-----|
| | | | 소계 | 2월 | 1월 | | | 20일 |
| 1998년 | | 433 | 400 | 161 | 230 | 9 | - | 33 |
| 1999년 | | 533 | 533 | 254 | 279 | - | - | - |
| 2000.8.현재 | | 533 | 508 | 196 | 242 | 70 | - | 25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1 | - | - | 2 | - | - | 3 | - | - | - | 4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5건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청송제1보호감호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763-710) |
| 전화번호 | 054-872-9507~8 |
| 팩스번호 | 054-872-9704 |
| 홈페이지 | |

2. 연혁

- 1982. 12. 15 준공

3. 수용구분

- 행장급형 인원(936)
(가급 : 0, 나급 : 0, 다급 : 609명, 라급 : 239명, 마급 : 61명, 비고 : 27명)
- 집행기간별 인원(936)
(1년 미만 : 345명, 2년 미만 : 254명, 3년 미만 : 139명, 4년 미만 : 74명,
5년 미만 : 30명, 5년 이상 : 94명)
- 특이 감호자 : 167명
(특정강화범 : 137명, 교정사고 우려자 : 17명, 마약사범위반자 : 11명
AIDS 환자 : 1명, 보안관찰 : 1명)
- 피보호감호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3.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252 | - | - |
| 직 원 | | 252 | 236 | -16 |
| 경비교도 | 경비교도대는 청송교도소에서 운영함.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3.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450 | 916 | | | 1.1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3 | 2 | 1 | - | - | 2 | 2 | 1 | - | 1 |
| 2001.7 | 3 | 3 | 1 | 1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이병훈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3건
○ 2000년도 : 7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2002년) : 5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 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3585 | 345 | 1329 | 83 | 2 | 59 | 17 | 4 | 1409 | 13 | 0 |

10.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 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 75 | 63 | 42 | 21 | - | - | 12 |
| 1999년 | | 111 | 82 | 49 | 32 | 1 | - | 29 |
| 2000. 8. 현재) | | 122 | 91 | 45 | 46 | - | - | 31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1 | - | - | - | 1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3건
- 2000년 : 6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12. 수용자 이용시설

1) 컴퓨터 보유현황 : 586급 97대, 펜티엄Ⅲ 72대(총 169대)

청송제2보호감호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763-710) |
| 전화번호 | 054-872-9511~2 |
| 팩스번호 | 054-872-9504 |
| 홈페이지 | |

2. 연혁

- 1982. 12. 15 준공

3. 수용구분

- 피보호감호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249 | 242 | - |
| 직원 | 249 | 242 | - |
| 경비교도 | - |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률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430 | 596 | 596 | - | 0.81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5 | 2 | 2 | - | - | 2 | 2 | 1 | 1 | 1 |
| 2001.7 | - | - | 1 | 1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박무영 | 의무서기관 | 내과 | 비전임 |
| 나종덕 | 의무사무관 | 치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3건
 ○ 2000년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4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4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 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 스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7,948 | 219 | 2,753 | 271 | 9 | 113 | 18 | 3 | 4347 | 90 | 124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71 | 60 | 27 | 33 | - | 11 |
| 1999년 | | 51 | 34 | 19 | 14 | 1 | 17 |
| 2000. 8월 | 현재 | 27 | 17 | 5 | 9 | 3 | 10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1999년 : 6건 ○ 2000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김천소년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 소 |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
| 전화번호 | 054-436-2191~4 |
| 팩스번호 | 054-436-2295 |
| 홈페이지 | www.gchboyccorr.go.kr |

2. 연혁

- 대구감옥 김천분감 개칭(경북 김천시평화동 245번지) 1921. 7. 15
- 대구감옥 김천지소로 개칭(1923. 5. 5)
-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 개칭(1924. 4. 15)
- 김천소년교도소로 개칭(1961. 12. 23)
- 현 위치로 신축 이전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번지) 1981. 6. 24

3. 수용구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미결수용자
- 형이 확정된 20세 미만의 남자로서 2범 이상의 수형자 (기결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340 | 337 | |
| 직 원 | 235 | 232 | |
| 경비교도 | 105 | 105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150 | 975 | 800 | 175 | 1.58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부경 | 의무서기관 | 정형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1325 | 1 | 10296 | 1008 | 20 |
| 1999년 | 13248 | 2 | 12333 | 905 | 8 |
| 2000년 7월 | 6334 | 0 | 5973 | 360 | 1 |

8.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0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87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373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7021 | 530 | 1068 | 703 | 78 | 174 | 89 | 114 | 3671 | 145 | 0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 73 | 73 | 49 | 24 | | | |
| 1999년 | | 75 | 74 | 47 | 27 | | 1 | |
| 2000.8.현재 | | 54 | 54 | 40 | 14 | | |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1건

진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
| 전화번호 | 055-741-2181~2 |
| 팩스번호 | 055-741-2428 |
| 홈페이지 | www.jinjucorr.go.kr |

2. 연혁

- 진주감옥으로 개칭(1908.7.17)
- 진주형무소로 개칭(1946)
- 진주교도소로 개칭(1961.12.23)
- 진주시 상봉서동에서 대곡면 광석리 700번지로 신축 이전(1989.12.3)

3. 수용구분

- 2범 교도소
- 전국 교정시설의 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들을 모아 수용하는 의료교도소 역할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393 | 388 | |
| 직원 | | 283 | 278 | |
| 경비교도 | | 110 | 110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440 | 1342 | 1169 | 173 | 1.6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10 | 9 | 5 | 4 | - | - | 3 | 3 | 2 | 2 | 1 |
| 2001.9 | | | 5 | 5 | - | -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이진철 | 의무사무관 | | |
| 곽태섭 | 의무서기관 | 신경정신 | 비전임 |
| 이영곤 | 의무사무관 | 내과 | 비전임 |
| 조영준 | 의무사무관 | 일반의 | 전임 |

3)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32484 | 0 | 28335 | 4149 | 0 |
| 1999년 | | 69008 | 0 | 62907 | 6100 | 1 |
| 2000년 | 7월 | 76108 | 7 | 70536 | 5475 | 0 |

4)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1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11건 ○ 2000년도 : 16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38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409건 ○ 접견실 현황 : 3개 호실
- 3) 특수 면회시설
 - 화상면회 시설 ○ 부부만남의 집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5586 | 375 | 1005 | 256 | 43 | 124 | 36 | 23 | 3447 | 262 | 0 |

10.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 원 작 업 정 지 | 경 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 241 | 235 | 121 | 111 | 3 | - | 6 |
| 1999년 | | 384 | 335 | 234 | 91 | 10 | - | 49 |
| 2000. 8. 현재 | | 250 | 221 | 160 | 56 | 5 | - | 29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1 | | | 1 | | | | 2 | | | 1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안동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동 121 |
| 전화번호 | 054-851-2517 |
| 팩스번호 | 054-858-7195 |
| 홈페이지 | mmcgo.co.kr |

2. 연혁

- 대구감옥 안동분감으로 개칭(1921. 7. 11)
- 안동형무소로 승격(1945. 11. 24.)
- 안동교도소로 개칭(1961. 12. 23)
- 현 위치로 이전(1985. 12. 13)

3. 수용구분

- 2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355 | 351 | |
| 직원 | 250 | 246 | |
| 경비교도 | 105 | 105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970 | 1150 | 1035 | 115 |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석곤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15,783 | 0 | 12,357 | 3,416 | 10 |
| 1999년 | | 16,085 | 0 | 12,451 | 3,629 | 5 |
| 2000년 | 7월 | 9,252 | 0 | 7,125 | 2,116 | 11 |

7. 연도별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3건 ○ 2000년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7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67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43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8889 | 724 | 1559 | 506 | 15 | 312 | 59 | 18 | 3339 | 563 | 51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40 | 134 | 49 | 82 | 3 | 6 |
| 1999년 | | 171 | 171 | 94 | 75 | 2 | - |
| 2000.8.현재 | | 231 | 229 | 160 | 67 | 2 | 2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2건
- 2000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울산구치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 |
| 전화번호 | 052-228-9700 |
| 팩스번호 | 052-228-9799 |
| 홈페이지 | udc.go.kr |

2. 연혁

- 대통령령 14157호에 따라 울산구치소 신설(1994.2.5)
- 관리동 3층, 수용동 5층으로 건설된 전국 최초의 준고층 건물
- 각 거실에 수세식 화장실, 세면기,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는 초현대식 시설

3. 수용구분

- 울산지방법원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울산지방법원 본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 형확정된 초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261 | 261 | |
| 직원 | 161 | 161 | |
| 경비교도 | 100 | 100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630 | 686 | 148 | 538 | 2.14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 | 1 | - | - | - | 1 | - | - | - | 1 |
| 2001.9 | - | - | 1 | 1 | - | - | - | - | - | - | 1 |

2)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3)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52939 | 11 | 35475 | 16952 | 501 |
| 1999년 | | 77268 | 4 | 50293 | 26522 | 449 |
| 2000년 7월 | | 44591 | 10 | 27049 | 17431 | 101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227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951건
- 접견실 현황 : 3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5304 | 86 | 93 | 739 | 39 | 105 | 89 | 13 | 4031 | 101 | 0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76 | 68 | 19 | 48 | 1 | 8 |
| 1999년 | | 126 | 113 | 42 | 64 | 7 | 13 |
| 2000. 8. 현재 | | 117 | 104 | 40 | 57 | 7 | 13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1 | - | - | - | - | - | - | - | - | - | - | 1 | - | - |

경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64 |
| 전화번호 | 054-740-3100 |
| 팩스번호 | 054-745-8171 |
| 홈페이지 | |

2. 연혁

- 1973. 9. 5. 개청

3. 수용구분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 및 포항지원 관할의 기결수용자
- 형이 확정된 초범 수용자 및 제1해병사단 보통 군법회의에서 형이 확정되고 군 인사법에 따라 제적된 군 수용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276 | 275 | |
| 직원 | | 186 | 185 | |
| 경비교도 | | 90 | 90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7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0. 9. 현재)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500 | 640 | 392 | 248 | 2.17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 | 1 | 1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김성환 | 의무서기관 | 정형외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20363 | 10 | 18376 | 1952 | 25 |
| 1999년 | | 26199 | 12 | 244416 | 1755 | 16 |
| 2000년 | 7월 | 13896 | 5 | 12826 | 1042 | 23 |

7. 청원현황

1) 연도별 청원건수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2건 ○ 2000년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3 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29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793건 ○ 접견실 현황 : 3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4128 | 93 | 380 | 100 | 24 | 35 | 18 | 10 | 3439 | 12 | 0 |

10.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 청원 정작 지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74 | 70 | 35 | 35 | | 4 | |
| 1999년 | 121 | 108 | 47 | 52 | 9 | 12 | |
| 2000. 8. 현재 | 43 | 37 | 17 | 18 | 2 | 6 |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174

전주교도소 178

목포교도소 181

군산교도소 185

순천교도소 189

장흥교도소 192

제주교도소 196

광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번지 우) 500-110 |
| 전화번호 | 062-251-4321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kwajucorr.go.kr |

2. 연혁

- 1908. 7. 16 광주 감옥 개칭
- 1923. 5. 5 광주 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광주 교도소로 개칭
- 1971. 7. 15 현 위치로 이전

3. 수용구분

- 광주지방법원 관할 미결수용자와 형확정 수형자
- 광주고등법원 항소피고인, 대법원 상고 공안사범 피고인과 형확정 수형자
- 한미행정협정사건 관련자
-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 지체부자유 수형자, 2범이상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426명 | 420명 | |
| 경비교도 | 140명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명 | 7명 | 1명 | 7명 | 5명 | 2명 | 5명 | 4명 | 1명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2,390 | 2,767 | 1,835 | 932 | 2.20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5 | 5 | 2 | 2 | - | - | 2 | 2 | 1 | 1 | - |
| 2001.9 | - | - | 2 | - | - | - |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박호진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 김병곤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74,874 | 0 | 71,470 | 3,122 | 282 |
| 1999년 | 64,770 | 0 | 59,195 | 5,427 | 148 |
| 2000년 7월 | 41,967 | 0 | 36,937 | 4,927 | 103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6건
- 1998년도 : 8건
- 1999년도 : 28건
- 2000년도 : 30건
- 2001년 7월 현재 : 11건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봉제공장, 목공장, 인쇄공장
- 위탁작업 : 전자부품조립, 봉투임가공, 악세사리 반제품
- 외부통근작업 : 30여명 취업중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417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 170건
- 1999년도 : 160건
- 2000년 8월현재 : 46건

3)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166건
- 접견실 현황 : 10개호실

4)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 운영중(13평)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3,517 | 461 | 773 | 1003 | 80 | 203 | 32 | 2361 | 7692 | 478 | 0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540 | 453 | 240 | 208 | 5 | 87 |
| 1999년 | | 557 | 479 | 239 | 221 | 19 | 78 |
| 2000년 (8월현재) | | 546 | 487 | 233 | 249 | 5 | 59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2 | - | - | - | 2 | - | - | - | 1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7건
- 2000년 : 11건
- 2001년 7월현재 : 3건

전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
| 전화번호 | 063 - 224 - 4361 |
| 팩스번호 | 063 - 221 - 3377 |
| 홈페이지 | http://www.cjcorr.go.kr |

2. 연혁

- 1908. 11. 20. 광주 감옥 전주 분감으로 설치
- 1920. 10. 27. 전주감옥으로 승격
- 1923. 05. 05. 전주형무소로 개칭
- 1961. 12. 23. 전주교도소로 개칭
- 1971. 12. 07. 현 위치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번지로 이전

3. 수용구분

- 전주지방법원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을 제외한 관할지원 제1심 한·미 행정협정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형 확정된 수형자
- 2범 이상 수형자
- 한·미 행정협정사건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3. 12.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429 | 419 | |
| 직원 | 309 | 304 | |
| 경비교도 | 120 | 115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별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5 | 2 | 7 | 5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2. 3. 12.)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590 | 1,868 | 1,469 | 399 | 2.24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3 | 3 | 1 | 1 | - | - | 2 | 2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주재호 | 의무서기관 | 일반의 | 전임 |

3)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병진료 |
|-------|----|--------|----|--------|-------|------|
| 1998년 | | 30,010 | 0 | 27,000 | 2,800 | 210 |
| 1999년 | | 64,510 | 0 | 58,399 | 5,887 | 224 |
| 2000년 | 7월 | 34,507 | 0 | 31,364 | 2,955 | 188 |

4)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7. 청원현황

○ 1997년도 : 17건 ○ 1998년도 : 7건
○ 1999년도 : 17건 ○ 2000년도 : 15건

○ 2001년 7월 현재 : 12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208건

2) 특별·교화 접견 실시현황

○ 1998년도 32건 ○ 1999년도 84건 ○ 2000년 8월 현재 75건

3)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1. 1 - 8. 31)

○ 변호인 접견건수 : 873건 ○ 접견실 현황 : 3개 호실

4)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4,534 | 876 | 3,914 | 671 | 17 | 44 | 27 | 50 | 6,492 | 576 | 0 |

10.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작업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387 | 359 | 218 | 141 | | 28 |
| 1999년 | | 453 | 420 | 184 | 223 | 13 | 33 |
| 2000년 (8월현재) | | 227 | 217 | 138 | 78 | 1 | 10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1 | . | 1 | . | . | . | . | 2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4건 ○ 2001년 7월 현재 : 4건

목포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번지 (우 534-702) |
| 전화번호 | 061 284 4101~8,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mpc.go.kr |

2. 연혁

- 1909.10.21 광주감옥 목포분감 총감부령 제31호
- 1914.11. 목포시 산정동으로 이전
- 1920.10.27 목포감옥으로 승격
- 1923. 5. 5 목포형무소로 개칭 총감부령 제31호
- 1961.12.23 목포교도소로 개칭 법률 제858호
- 1989.11.26 현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

3. 수용구분

- 2범이상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260명 | 254명 | |
| 경비교도 | 115명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거류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500 | 1,648 | 1,441 | 207 | 1.95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3 | 3 | 1 | 1 | | | 1 | 1 | 1 | 1 | 1 |
| 2001.9 | 1 | 1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강철 | 의무서기관 | 마취과 | 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27,328 | 0 | 26,705 | 511 | 112 |
| 1999년 | 27,287 | 0 | 26,580 | 616 | 91 |
| 2000년 7월 | 14,357 | 0 | 14,003 | 316 | 38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1건
- 1998년도 : 5건
- 1999년도 : 7건
- 2000년도 : 18건
- 2001년 7월 현재 : 15건

8.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목공, 봉제공, 인쇄공
- 위탁작업 : 바구니조립, 각종시장가방, 꽃계 동발조립작업

* 직업훈련(법무부 제 14 공공직업훈련소 인가) 훈련종목 : 자동차정비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양복기능사 이용사 목재창호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98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238건
- 접견실 현황 : 2호실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11,848 | 90 | 3090 | 280 | 463 | 492 | 150 | 136 | 6292 | 391 | 162 |

11. 징벌현황

1) 징벌 집행 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작업 정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80 | 174 | 91 | 83 | | 6 |
| 1999년 | | 158 | 151 | 92 | 58 | 1 | 7 |
| 2000년 (8월현재) | | 139 | 135 | 79 | 54 | 2 | 4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0건
- 2000년 : 4건
- 2001년 7월현재 : 3건

군산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우 573-708) |
| 전화번호 | 063) 462 - 0101 ~ 3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kscorr.go.kr |

2. 연혁

- 1910. 11. 1 광주감옥 군산분감으로 개칭
- 1961. 12. 31 군산교도소로 개칭
- 1988. 11. 2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로 이전

3. 수용구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의 미결수용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및 정읍지원에서 형이 확정된자
- 초범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 | |
| 직원 | 246 | 241 | |
| 경비교도 | 105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250 | 1,318 | 1,087 | 231 | 2.09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1 |
| 2001.9 | 1 | 1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곽홍수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3,761 | 0 | 11,914 | 1,808 | 39 |
| 1999년 | 18,385 | 0 | 15,951 | 2,392 | 42 |
| 2000년 7월 | 11,055 | 0 | 8,317 | 2,716 | 22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0건
- 1998년도 : 0건
- 1999년도 : 4건
- 2000년도 : 6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9.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목공, 철공, 봉제공, 인쇄공
- 위탁작업 : 봉제제품, 전자부품, 쇼핑백제작등
- 외부통근 : 제조업분야

10.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30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363건
- 접견실 현황 : 2개호실

11.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 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순수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 도서 |
|-----------|-----|-------|----------|----------|----------|----|----|-------|----|----------|
| 7,190 | 173 | 1,260 | 724 | 46 | 108 | 48 | 61 | 4,528 | 58 | 117 |

12.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차 | | | | 청원 작업 정 | 경고 |
|-----------------|-----|-----|----|----|-----|---------------|----|
| | | 소계 | 2월 | 1월 | 20일 | | |
| 1998년 | 82 | 82 | 43 | 38 | 1 | | |
| 1999년 | 128 | 118 | 59 | 57 | 2 | | 10 |
| 2000년 (8월현재) | 108 | 86 | 48 | 38 | | | 22 |

20.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1 | | | | | | | 2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현재 : 1건

순천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번지 (우 540-708) |
| 전화번호 | 061-751-2114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http://www.sccorr.go.kr |

2. 연혁

- 1967. 12. 20 순천교도소로 개칭(대통령령 제3140호)
- 현재 신축중(2003년도 준공예정)

3.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직원 | 254 | 247 | |
| 경비교도 | 100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8 | 6 | 2 | 6 | 4 | 2 | 5 | 4 | 1 |

4.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1,100 | 705 | 441 | 264 | 2.05 | |

5.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
| 2001.9 | 1 | 1 | | | | | | | | | 1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박경철 | 의무서기관 | 일반외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18,754 | 0 | 17,098 | 1,305 | 351 |
| 1999년 | 24,558 | 0 | 22,476 | 1,844 | 238 |
| 2000년 7월 | 12,723 | 0 | 11,301 | 1,285 | 137 |

6. 청원현황

- 1997년도 : 4건
- 1998년도 : 1건
- 1999년도 : 0건
- 2000년도 : 0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7. 작업특성 및 내역

- 직영작업 : 봉제, 영농, 인쇄

○ 정예직업훈련소(법무부 제11공공직업훈련소) : 목재 창호, 건축일반시공, 고압가스, 전기공사, 광고도장, 한식조리 훈련

8.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47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737건

○ 접견실 현황 : 1개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6,130 | 46 | 1,078 | 134 | 7 | 274 | 27 | 17 | 3,935 | 209 | 361 |

10. 징벌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치 | | | 청원작업지정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108 | 108 | 71 | 37 | | |
| 1999년 | | 71 | 71 | 27 | 42 | 2 | |
| 2000년 (8월현재) | | 19 | 19 | 11 | 8 | |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치사 |
| 인원 | 1 | | | | 1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0건

○ 2001년 7월현재 : 0건

장흥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우(529-805) |
| 전화번호 | 061) - 860 - 9114 |
| 팩스번호 | 061) - 862 - 7961 |
| 홈페이지 | http://www.jhcorr.go.kr |

2. 연혁

- 1975. 4. 15. 장흥교도소로 개칭(대통령령 제6765호)

3. 수용구분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소 및 해남지소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 피의자 및 피고인
- 초범 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2. 3. 20.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247 | 236 | |
| 직원 | 167 | 160 | 교위-9, 교도+2 |
| 경비교도 | 80 | 76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취류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벌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400 | 419 (여13) | 392 (12) | 27 (1) | 2.23명 | 초범 402 재범 17 |

6. 시설

1) 시설구분

| 구분 | 수 | 동수 | 면적 |
|-----|---|----|----------|
| 계 | | 42 | 9,047.89 |
| 사동 | | 3 | 1,352.78 |
| 공장 | | 2 | 529.92 |
| 교육장 | | 2 | 140.00 |
| 기타 | | 35 | 7,025.19 |

2) 거실구분

| 수량 | 종류 | 혼거실 | | | | | 독거실 | | | | | |
|-----|----|-----|----|----|----|----|-----|----|----|----|----|----|
| | | 계 | 여사 | 병사 | 미결 | 기결 | 계 | 여사 | 병사 | 징별 | 일반 | 보호 |
| 59개 | | 37 | 3 | 3 | 3 | 30 | 22 | 1 | 2 | 3 | 10 | 6 |

7.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1 | 1 | 1 | | | 1 | | | | 1 |
| 2001.9 | 1 | 1 | | | | | |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위성읍 | 서기관 | 일반의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310 | 0 | 233 | 42 | 35 |
| 1999년 | 343 | 0 | 242 | 52 | 49 |
| 2000년 7월 | | | | | |

8. 청원현황

- 1997년도 : 없음
- 1998년도 : 없음
- 1999년도 : 7건
- 2000년도 : 7건
- 2001년 7월 현재 : 3건

9. 면회시설 및 현황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21건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 1. 1. - 8. 31)

- 변호인 접견건수 : 78건
- 접견실 현황 : 1개 호실

3) 특수 면회시설

- 부부만남의 집

10.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7,572 | 253 | 1,061 | 461 | 25 | 147 | 13 | 48 | 4,499 | 186 | 160 |

11.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치 | | | 청원 작업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28 | 24 | 10 | 11 | 3 | 4 |
| 1999년 | | 34 | 34 | 21 | 13 | - | - |
| 2000년 (8월현재) | | 19 | 19 | 11 | 8 | - | - |

12.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1건
- 2000년 : 1건
- 2001년 7월 현재 : 1건

제주교도소 현황

1. 위치

| | |
|------|---|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
| 전화번호 | 064 - 742-1062 |
| 팩스번호 | 064 - 742-1067 |
| 홈페이지 | http://www.chejucorr.go.kr |

2. 연혁

- 1971. 10. 22. 제주교도소 개청

3. 수용구분

- 제주지방법원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 제기 피고인
-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제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피고인
- 제주지방법원 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형이 확정된 2범 이상 성년 수형자
- 제주도에서 형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
- 제주방어사 군사법원에서 제적된 군수형자

4. 행정조직 관련

1) 교정직원 및 경비교도 현황(2001. 7. 31. 현재)

| 구분 \ 인원 | 정원 | 현원 | 비고 |
|---------|-----|-----|----|
| 직원 | 165 | 163 | |
| 경비교도 | | | |

2)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

| 귀휴심사위원회 | | | 급식관리위원회 | | | 징별위원회 | | |
|---------|------|------|---------|------|------|-------|------|------|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계 | 내부인원 | 민간위원 |
| 7 | 6 | 1 | 6 | 4 | 2 | 5 | 4 | 1 |

5. 수용자 현황(2001. 8. 30.)

| 수용정원(능력) | 수용인원 | | | 수용밀도 | 비고 |
|----------|------|-----|-----|------|----|
| | 계 | 기결 | 미결 | | |
| 520 | 658 | 306 | 352 | 2.26 | |

6. 의료 현황

1) 의료직 공무원 현황(2000. 8. 현재)

| | 계 | | 의사 | | 약사 | | 간호사 | | 의료기술 | | 공중보건의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2000.8 | 2 | 2 | 1 | 1 | | | 1 | 1 | | | |

2) 의무관 현황(2000. 8. 현재)

| 성명 | 직급 | 전공과목 | 전임여부 |
|-----|-------|------|------|
| 박재홍 | 의무서기관 | 내과 | 비전임 |

3)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2000년 : 37,000원 ○ 2001년 : 48,000원 ○ 2002년 : 59,000원

4) 미결수용자 진료 내역

| 연도 | 구분 | 계 | 수술 | 투약 | 처치 | 초빙진료 |
|-------|----|--------|----|--------|-------|------|
| 1998년 | | 23,081 | 0 | 18,109 | 4,566 | 406 |
| 1999년 | | 24,248 | 0 | 18,354 | 4,914 | 980 |
| 2000년 | 7월 | 14,480 | | 11,960 | 1,885 | 635 |

7. 청원현황

- 1997년도 : 없음
- 1998년도 : 없음
- 1999년도 : 4건
- 2000년도 : 2건

○ 2001년 7월 현재 : 2건

8. 면회시설 및 현황

- 1) 1일 평균 면회현황(1998년) : 125건
- 2) 변호인 접견실 현황 및 사용건수(1999년)
 - 변호인 접견건수 : 562건
 - 접견실 현황 : 2개 호실

9. 도서비치 현황(1999년 ~ 2000년 9월)

| 총보유권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7,354 | 75 | 431 | 630 | 92 | 55 | 7 | 38 | 5,063 | 114 | 0 |

10. 징벌집행현황

| 연도 | 구분 | 계 | 금 치 | | | 청원 정작 지 | 경고 |
|----------|----|----|-----|----|----|---------------|----|
| | | | 소계 | 2월 | 1월 | | |
| 1998년 | | 31 | 31 | 11 | 20 | | |
| 1999년 | | 43 | 38 | 19 | 17 | 2 | 5 |
| 2000년 8월 | | 30 | 29 | 14 | 15 | | 1 |

11. 사고

1) 사망자 현황

| 연도 | 1997년 | | | | 1998년 | | | 1999년 | | | | 2000년 8월말 | | |
|----|-------|----|----------|----|-------|----|----------|-------|----|----------|----|-----------|----|----------|
|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기타 | 병사 | 자살 | 폭행 치사 |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

○ 1999년 : 없음 ○ 2000년 : 없음 ○ 2001년 7월 현재 : 없음

구금시설 실태조사 항목

1. 시설

1. 설립년도 및 연혁(개축/ 이전 등)
2. 주소 및 연락처(주소/ 전화/ 약도/ 등)
3. 전체면적 및 건축물구조현황
주건물/ 운동장/ 체육관/ 식당/ 공장/ 교육장/ 강당(교회당) 등)
4. 내부구조 및 현황
 - ① 재소자 수용 및 사용시설
 - 사동 - 병사/ 여사/ 미결사/ 기결사/ 징벌사 등 위치 및 수와 면적, 수용된 인원
 - 사방(거실) - 독거실/혼거실/징벌실/조사실 등의 위치 및 수와 면적, 수용된 인원
 - 사용시설 - 접견실(변호인) / 면회실/운동장/ 취사장 / 목욕탕/ 의료시설 / 교육장 / 강당(교회당) 존재유무와 위치 및 수와 면적
 - ② 행정업무면적 및 현황 : 청사 / 서무과/ 보안과/ 교무과/ 분류과/ 작업과 / 용도과 등 위치 및 면적,
 - ③ 직원이용시설(식당 휴게실 체육관 관사 등)
 - ④ 경교대 시설 : 막사/ 운동장 등 경교대 이용시설 현황
5. 내부상세구도(그림)
6. 시설의 특정목적 : 개방/초범/과실범/치료/감호 등
7. 교육특성 : 직업훈련이나 전문교육

II. 조직 및 교정공무원 현황

1. 소장(부소장) 이름

2. 조직체계도

3. 교정공무원 현황

- ① 정원/현원
- ② 여성교정공무원 현황
- ③ 각 부서별 업무 배치현황(이름과 인원, 직급)
- ④ 각 교정공무원 근무형태(야간3부제 실태 및 4부 3교대, 중번순찰제 시행 여부)
- ⑤ 교정 공무원 대 수용자 비율 및 여성수용자 대 여성교정공무원 비율

4. 민간인 참여현황

- ① 교정시설별 귀휴심사위원회,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징벌위원회
외부 민간인 참여현황(인원 및 신상, 내역)
- ② 교화(종교)위원 참여현황(인원 및 신상)
- ③ 가석방 심사위원회 민간인 참여현황(인원 및 신상)

5. 경비교도대 현황 : 인원 및 각 업무별 배치현황

III. 수감자 현황

1. 수감자 인원

- ① 정원/ 현원
- ② 미결/기결(출력 및 미지정)
- ③ 남/ 여/ 임신부 및 유아
- ④ 독거/ 혼거 /병거 수용인원 및 독거 수용원인
- ⑤ 누진처우에 따른 각 급수 해당 인원 및 급외자 인원과 급외사유
- ⑥ 수용밀도

2. 범죄별 수용현황 : 범죄유형별

: 횡수별(초범/재범/3범 등)

3. 수용원인별 수용인원현황(연령별/전과별/집행기간별/병명별/학력 등)

4. 재소자 1일 시간표

IV. 처우

1. 의료 관련

- ① 의료비(전체/1인당)
- ② 의료장비 및 의료약품 보유현황
- ③ 의료인 현황(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 인원과 전공, 직급(보수), 전임/비전임 여부
- ④ 지정병원 및 사회병원(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치료/ 검사/ 수술 내역)
- ⑤ 의료실 이용현황과 내역(투약/ 처치/ 등) 및 재소자 요청대비
- ⑥ 의료비 예산 및 집행실태(집행액, 의약품구입, 외부병원진료비)
- ⑦ 의료비 사용(집행)기준
- ⑧ 정기검진 내역 및 시행일(간격)
- ⑨ 병실수와 환자수

2. 청원 관련

- ① 청원현황 및 처리결과, 처리기간
- ② 청원내용별 분류
- ③ 청원자에 대한 분류(죄명별/나이별/집행기간별 등)
- ④ 순열공무원 순열 횡수
- ⑤ 순열공무원에 대한 청원횡수(서면/ 구술별) 및 청원사유 및 처리결과

3. 작업

- ① 작업별(직영/ 위탁/노무 등) 투입인원 /생산품목 /생산액
- ② 작업특성(양재/ 축산 등)
- ③ 1일 작업시간

- ④ 작업 교육강사 유무, 교육 내용 및 시간
- ⑤ 상여금지급현황(지급인원 및 평균지급액)/ 수익금/ 상여금/ 사용처
- ⑥ 작업 중 사고발생 현황(사유, 처리결과) 및 각 위로금 지급내역
- ⑦ 공공직업훈련소(노동부 인가) 설치유무, 규모 및 훈련직종, 해당인원

4. 면회

- ① 면회실 수 및 크기(남 /여 구분, 기 /미결 구분)
- ② 면회시간과 하루평균 면회수
- ③ 평균면회 대기시간
- ④ 평균 면회 담당직원수
- ⑤ 특수면회시설 유무(화상면회 시설, 부부 만남의 집 등)
- ⑥ 접견 거부 사유 및 내역
- ⑦ 특별면회 운영실태 현황 및 운영기준
- ⑧ 특별면회실 유무 및 구조
- ⑨ 특별면회 시간

5. 집필·도서·신문 관련

- ① 집필보고전 신청 횟수 및 허/ 불허 내역, 불허 사유
- ② 집필 도구 내역(펜 / 종이 / 공책 종류) 및 보급방법, 수량
- ③ 집필노트 외부반입여부
- ④ 편지 불허건수 및 불허기준, 불허후 본인통보 여부, 불허된 편지 처리결과
- ⑤ 편지집필에 대한 통수, 장수, 횟수 제한여부 /편지 검열기간(평균)
- ⑥ 수신 편지에 대한 불허기준 및 내역, 본인통보 여부
- ⑦ 도서관 존재 유무 및 도서보유 현황, 도서대출 현황
- ⑧ 도서검열 현황 -불허(금서) 목록 존재유무 및 불허사유(기준)
- ⑨ 잡지·신문 구독내역
- ⑩ 잡지·신문 검열 기준 및 불허 내역

6. 징벌 관련

- ① 징벌 사유 및 내역과 처리현황
- ② 징벌집행유예 현황

- ③ 징벌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 ④ 피조사자 대비 징벌집행자
- ⑤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기간
- ⑥ 피조사자에 대한 관계인 출석실태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 여부
- ⑦ 조사기간이 징벌기간에 산입된 내역
- ⑧ 일명 “떡방(이중방)”의 존재유무 및 현재 사용내역

7. 계구 및 무기 내역

- ① 계구 종류(내역) 및 보유 실태
- ② 계구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 사용방법
- ③ 각 계구별 사용요건
- ④ 무기 보유 내역 및 사용 실태
- ⑤ 무기사용 기준

8. 운동 및 종교활동

- ① 운동 실시 장소(남/여, 기/미결) 및 면적. *미결의 경우 운동장 도면
- ② 운동기구 내역 및 운동 실시 내역
- ③ 운동시간(남/여, 기/미결) 및 횟수
- ④ 공휴일 운동내역
- ⑤ 종교별 집회 현황(참가인원) 및 집회장소

9. 교육활동 관련

- ①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 내역
- ② 교육예산 및 집행내역
- ③ 전문강사 존재유무
- ④ 교육 수강 기준
- ⑤ 검정고시 내역

10. 목욕 및 세탁 등 위생관련

- ① 목욕 시간과 횟수
- ② 목욕탕 존재여부, 탕내 설치 물품 내역, 온수사용 여부

- ③ 목욕방법(샤워, 목욕 등) 및 목욕장소
- ④ 목욕시 1인당 물사용량
- ⑤ 세탁장소 및 횟수, 세탁방법, 세탁기 사용여부, 세탁물 건조방법
- ⑥ 이불 세탁방법 및 교체기간, 소독여부

11. 주부식비 관련

- ① 주부식비(총액수/1인당액수)
- ② 영양사 유무 및 식단기준
- ③ 식당근무 직원수(남/여, 교대비율)
- ④ 주부식 공급처 및 계약방법
- ⑤ 식수 내역 및 보급현황
- ⑥ 최근 5년간 음식관련 사고 현황

12. 물품 구입 및 지급 현황

- ① 구매(자변) 물품(상세 내역별로)
- ② 구매물품 제공 업체 및 계약방식, 판매수의 사용처
- ③ 수형자 1인당 지급물품 내역(이불, 비누, 칫솔, 생리대 등) 및 수량
- ④ 각 거실에 공통 지급되는 물품현황(탁자, 거울 등)
- ⑤ 수형자 계절에 따른 관복 및 침구 지급내역(수량, 지급시기)
- ⑥ 수형자 사복 착용 내역 및 현황

13. 급여물품 현황

- ① 사방 보유 물품 내역(관급품)
- ② 각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여부
- ③ 각 거실 조명 종류(와트)
- ④ 화장실 형태(재래식/ 수세식)
- ⑤ 각 거실 수도 보유 여부
- ⑥ 각 거실 TV 보유 내역 및 시청시간표
- ⑦ 각 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유인물 내역

14. 냉난방 관련

- ① 난방비 예산내역 및 지출현황
- ② 난방 방법 및 실태
- ③ 1일 난방 횟수 및 시간

15. 영치금 품 관련

- ① 영치금 평균
- ② 이자 사용내역
- ③ 영치품

16. 귀휴, 사회참관 및 가석방

- ① 귀휴 현황 및 사유 및 내역, 일수
- ② 사회참관 현황 및 내역
- ③ 최근 5년간 가석방자 현황(가석방 기준, 집행인원, 형집행을 현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
- ④ 외출·외박 현황

17. 사고관련

- ① 교정공무원 비리내역 및 비위유형별 처리결과
- ② 최근 5년간 수형자 사망사고(병사/ 자살/ 폭행치사) 현황 및 처리결과
- ③ 최근 5년간 교정사고(자살/ 도주/ 폭행/ 성관련 범죄 등) 현황 및 처리결과
- ④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내역 및 처리결과)
- ⑤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고소, 고발 건수와 사유

기타 수용자 이용시설

- ① 컴퓨터(수형자 사용) 보유여부와 수
- ② 전화 설치장소 및 1인당 사용횟수, 시간, 사용기준

V. 기타

- 1. 소별 특이사건 일지
- 2. 소별 특기사항